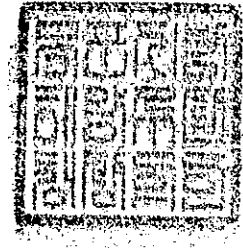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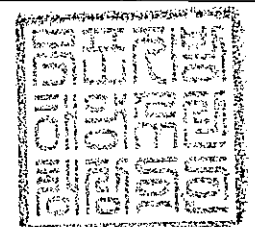
여객선 대흥고속카페리호 운항관리규정

[남강 -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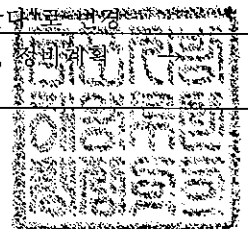


합자회사 대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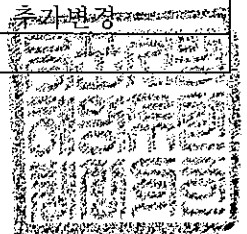
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1	'16. 06. 21.	전 장	제 정
2	16. 07.27	제8조②-1-다항	업무를-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달로 변경
		제8조③(변경)	안전관리조직도 수정
		제23조②-(변경)	수화물 보관관장소→(선수우현창고) 추가
		제25조-3 (변경)	위험물 보관장소→(선수좌현창고) 추가
		제27조②-1(추가)	화기작업 추가
		제31조④ (변경)	퇴선훈련주기“매월”을→“매 10일”로 변경9붙임11 동일
3	16. 10. 27	제5조①.②	“숙지” → “이행·유지” 로 변경
		제8조②-1-다항	업무를 -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한다 로 변경
		제8조②-1. 2	1. 본사 → (주된 사업소) 추가 2. 영업소(지점) → 지점(영업소)로 변경
		제8조③	1. 안전관리조직도-안전관리책임자 “김광용을 박기배로 변경 2. 안전관리조직도 “영업소장” 추가
		제10조①-5	삭제
		제10조①-6	제10조①-6 → 5 로 변경(내용 - 현행 6호와 동일)
		제10조①-6, 7	1. 제10조①-7 → 6 로 변경 2.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로 변경
		제10조①-8 ~ 13	제10조①-7 ~ 12 로 변경(현행 -7 ~ 13호와 동일)
		제10조③	삭제 (제11조 제②항에 통합)
		제11조②(변경)	“불가능 할 - - 진다” → - 불가능 하거나 부재시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 고 그 사실을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 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지 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변경
		제11조③(신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 신설
		제16조①(단서신설)	--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제18조⑤-1,2항 (추가)	1운항항로 2항로 추가하고, 기존 2항로를 3으로 변경 (내용동일)
		제18조⑤-4항 (추가)	가출항시 보고지점 2 추가하고, 기존 2항로를 3으로 변경 (내용동일)
		제18조-8항 (변경)	“도초농협카페리”를 - “도초카페리”로 변경
		제19조①(문구수정)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 - 문구수정
		제21조① (문구 수정)	① 안전관리책임자 → ① 회사---- - 문구수정
		제21조⑨ (법령일치)	- 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 법령과 일치키 위해 문구 수정
		제23조-6-라(분리)	→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 로 - 분리
		제26조-11 (문구수정)	기타 사항 → 기타 사항 로 변경 - 문구 수정
		제27조②-1항 추가	(화기작업) - 추가
		제29조⑤-1항(변경)	“비상조직도 및 임무”표상 조사반의 총무를 “공무” 로 변경
		제31조-④ (법령일치)	④ 선박 비상대응 훈련 및 교육 시행주기표 수정 “매월 - 10 일” 변경 (붙임11) 포함 - 법령일치
		제32조-② (문구수정)	② 제1호에 → ② 제1항 으로 변경 - 문구수정
		제33조 (법령일치)	--- 즉시 시정조치 - - - → --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문구수정
		제43조① (법령일치)	안전관리부서에 전에 -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상태 확인 전에 - - 추가
		제45조② (추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
		제46조-② (추가)	② 이 규정은 운항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선의 선종별, 톤수, 회사의 구조, 항만별 특성 등에 따라 가감·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추가
		제46조-③ (추가)	③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추가
4	17. 09. 29	제8조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관리책임자 박기배에서 조원욱 으로
		제20조(통신업무)	③항 해양안전 경비서→목포해양경찰서로
		제29조 (비상대응)	⑤항1호 비상연락기관, 해양안전경비서→목포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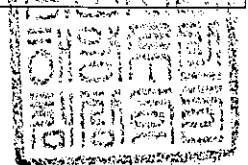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4	17.12.	제8조(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관리책임자 조원옥에서 김광용으로
		제18조(여객선제원 및)운항구역등)①	항해속력15.0노트→14.5노트 변경
		제18조(항해업무)⑤	목포→가산 운항시간 1h40m→운항시간(편도) 58m으로 수정
		제29조(비상대응)	목포해양경비안전서→목포해양경찰서로 변경
		제35조(유류관리)	목포해양경비안전서→목포해양경찰서로 변경
		제44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찰서 변경
		붙임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목포지방해양수산청-13805(2016.12.30.)에 의거 수정
		[붙임7] 선원법법정 교육 목록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등 내용 추가--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표1에 맞추어 수정
		[붙임9] 선박정비 계획표	용어 통일
		[붙임11] 1)소화훈련 요령	관할해양경비안전서→관할해양경찰서 변경
		[붙임14] 선박문서 보존연한	6개월 보존기록→1년으로 변경
5	2019. 01. 03	제20조(통신업무) 2항 표	출항직후를 “출항 후 10분 이내”로 변경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2018. 12. 6))(별표2)
		제29조(비상대응) ②항	비상소집장소 변경(차량구역 좌우현 선미를 차량구역 선미 좌우현 과 차량구역 선수 좌우현 로 변경)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② ③항	①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를 운항관리자 미배치지역으로 변경 ② 결함사항 발견 . . 에 .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추가 ③별지 제2호를 별지 제1호로 변경
		제42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①항	5. 해상사고를 해양사고로 변경
		[붙임8]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2호 서식	감항성항에 주기 및 발전기의 연료유 공급탱크 충전은 확인 했는가? 추가
		[붙임9] (선박정비계획 표(분기별))	“주기관 기측운전, 제어 시운전 확인” 추가
6	2019. 01. 07	제8조(안전관리조직) ②-2항 지점(영업소)	지점(영업소)에 신안군 암태도(남강) 추가
		제18조(항해업무)	⑤-1 운항항로상 기항지에 암태(남강) 추가 ⑤-2 기점, 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란에 암태(남강) 추가
		제18조(항해업무)	⑤-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장소에 암태(남강) 추가
7	2019. 01. 16	표지	(설 연휴 특송기간에 한해 적용) 추가
		제8조(안전관리조직)③항	안전관리조직도상 해무담당 이민경을 박행식으로 변경
		제18조(항해업무) ⑤항의 3-가 -1)	항로상 위험구역 안좌도 읍동앞, 노대도 남단부근(34-46-00N, 126-02-42E)를 (34-45-54N, 126-02-42E)로 변경
8	2019. 3. 28	제18조(항해업무)의 7,8항	7항 설 연휴 특별기간중 운항 시간표 추가 8항 설 연휴 특별기간중 정박지는 암태(남강)으로 한다
		표지	(목포-송공=남강-가산)를 (남강 - 가산)으로 변경
		제8조(안전관리조직)다 - 2.지점(영업소) 가	2. 지점(영업소) 가. 기본사항 표 안좌, 팔금, 도초, 송공항 삭제
		제9조(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②항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 안전관리책임자는 최고경영자와 직접 -- 위 삭제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항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로 개정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항6	①항 6. 여객선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를 삭제



8	2019. 3. 28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②항	②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삭제 ②항 1.를 13으로 변경하고, "수석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삭제 ②항 2, 3, 4, 5를 → 14, 15, 16, 17로 변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표	① 표상 항로 "목포-도초"를 "남강-가산"으로 변경
		제18조(항해업무) ⑤ - 1	1. 운항항로 표 전체 수정(1. 남강 - 가산, 2. 가산 - 남강)
		제18조(항해업무) ⑤ - 1, 2, 3, 4, 8 항 수정	1. 운항항로 표 전체 수정(1. 남강 - 가산, 2. 가산 - 남강) 2. 기점, 종점 및 기항지 표 1) 삭제 및 2) 송공 삭제 3. 항로상의 위험구역중 가. 압초(간출암) 및 저수심 1) 압초 : 비금수도(34-42-57N, 126-56-42E) 삼도부근(34-46-18N, 126-03-00E) 2) 저수심 : 노대도 남단(34-45-54N, 126-02-42E) 중앙대교 서방(북방위 표지) 로 변경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장소 - 항로가 아닌 구역 삭제 8.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현황 - 표 삭제
		제18조(항해업무) ⑤-7	7. 태풍 내습시 또는 기상악화시 선박의 피항지 나. 도초항 삭제
		제18조(항해업무)의 7,8항 삭제	설 연휴 특송기간으로 한정 운항 했던 항목 삭제 - 7항 설 연휴 특별기간중 운항 시간표 추가 - 8항 설 연휴 특별기간중 정박지는 압태(남강)으로 한다
		제20조(통신업무) ⑤항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를 119로 변경
		제22조(여객선수사항의 전달) ③항7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를 119로 변경
		제23조(화물관리) 1-가	차량의 최대적적재수 표에 소형승용차 추가 및 대형승용차 25대를 27대로 변경
		제29조(비상대응) ⑤1	⑤ 1 표 안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를 119로 변경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③항 수정	③여객선 정기점검(월례,특별점검--)를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로 변경
		[붙임1] 항로도	[붙임1] 항로도중 송공항 구간 삭제
		[붙임5] 차량적재 및 고박장치도	소형승용차 추가 및 대형승용차 25대를 27대로 도면 변경
		[붙임9] .선박계획정비표 (일별) 항해3	3. 기적, 사이렌 작동상태 확인을 기적, 사이렌, 호종 작동상태 확인으로 호종 추가
		[붙임11]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통신유지사항	SSB, V H 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중 SSB 삭제
		[붙임11] 비상훈련 시나리오	비상훈련 시나리오 중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를 119로 변경
		[붙임13]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 "구명"	LIFE JACKET(구명동의)를 LIFE JACKET(구명조끼)로 변경
9	2019. 4. 23	제8조(안전관리조직)	③ 안전관리책임자 김광웅에서 박기배로 변경
10	2019. 10.15	제2조(용어의 정의)-1항	선박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제9조(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 ④항	선박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 ②항	선박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제18조(항해업무)-②항	② 선장 및 -- 시간당 1회 이상 다음에 "몇 일일" 추가하여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몇 일일 운항 종료시 로 변경
		제20조(통신업무) - ②항	선박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제29조(비상대응)-⑤-5항	선박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제31조(선박의 안전점검)①항	선장 다음에 "몇 기관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를 추가 변경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 ①항	선박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
		[붙임 8] 출항전 여객선점검 보고서	출항전 여객선점검 보고서(여객선용 여객선) 표 중 안전/보안등 란 기관실내를 기관실 및 타기실내로 추가변경



번호	개정 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11	2020 11. 05	제2조(용어의 정의)	1. “운항관리자”란 - - - 여객선·안전운항에 - - 말한다 - 자구수정 12. “차량적제도”란 문구에 정부대행기관 - - 도면을 말한다 - 자구수정 16. “운항관리센터”란 - - - -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 신설
		제5조(방침- 이행.유지 및)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 ---)로 -자구수정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권한)-4항	4. 과승·과적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차량·화물 집계표 확인 및 정확한 화물 계측 실시 -자구수정
		제8조(안전관리조직도)① ②	① 회사는 조직도를 두며 - - 정한다 -주제추가 ②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18」와 같으며로 수정하고 “표” 이동 -자구수정
		제9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선임 등)②④	② 안전관리책임자 - - 선임하여야 하며, - - 한다. -자구수정 ④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 자구수정 - 규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②항	② -(10일 이상) 업무 유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백이 발생한 날의 7일 이내에 - - 책임을 진다 -자구수정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①-5항	4. 여객전담선원을 여객안전관리선원으로 변경 -자구수정 5. 승선권 발급 내역과 추가 -자구수정
		제13조(선장의 - 권한) ④	④ - 여객전담선원,를 - 여객안전관리선원으로 변경 -자구수정
		제15조(채용·배승 관리)①	① 선원의 채용·승진 -기관장의 채용·승진-에서 승진”를 삭제 -자구수정
		제16조(인수인계) ②,⑤	② 선장교대 이전에 추가 -자구수정 ⑤ 선장 및 기관장의 업무대행 관련 1 ~ 5항 - 신설
		제18조(항해업무) ③⑤,⑥	③-1. 입·출항시 및 항계 내에서 -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 국제여객선터미널 남단과 삼학도 서단을 - - 5노트 이내 -자구수정 -국제여객선터미널부터 - -남단 등대까지 20노트 이내 -자구수정 ⑤-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가, 나, 다항 삭제 - 중복분구 삭제 ⑤-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보유하여야 한다.(「선박설비기준」 제93조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법적근거 ⑥-4. 여객선이 - --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가. 안전한 임시정박하여야 하며, 임시정박이 - - 한다. -자구수정 ⑥-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 -자구수정
		제19조(입·출항시 업무)③⑤	③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추가 -자구수정 ⑤ 선장 및 기관장 다운에 (불가피한 경우 - 위임한 자) 추가 -자구수정
		제21조(여객업무) ⑦	⑦ - -. “여객전담선원”을 “여객안전관리선원” 으로 변경 -자구수정
		제22조(여객준수-전달)③	③ 여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구수정
		제23조(화물관리)③-2, 7	2. 선적화물은 적적화물로 문구변경 7. 검토하여야를 검토토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 -자구수정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②	①② 문구에 선박검사기관인 “정부대행검사기관” 추가 - 문구정리 및 자구수정
		제28조(사고처리시준수사항)	5. 선박을 떠나지 말 것으로 문구 수정 6. 육상종업원을 육상근무자로 문구 수정 - 자구수정
		제34조(선내정비 및 점검 등)⑤	⑤ “여객구역”은 추가 - 자구수정
		제42조(여객선안전정보공개)	①-6 개조허가 대상을 구조변경허가 대상으로 수정 - 자구수정
		제42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제42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②항 신설
		[붙임9] 선박계획정비표	9-1 ~ 9-8.3까지 수정 및 변경 - 표준운항관리규정 에 근거
		[붙임11] 비상대응 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표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표상 선내숙지훈련 및 추진기관고장, 충돌·좌초 및 전복 훈련 추가 - 항목추가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비상상황 유형” 표 5, 6, 7항 추가
		[붙임11] 비상대응 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5. 기름유출 대처훈련 / 6.추진기관 고장 훈련 / 7.충돌·좌초 및 전복사고 훈련 추가 -항목추가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안전관리 조직도 이동 및 담당변경 (여객, 해무, 화물담당자 변경) -조직도 이동 및 담당변경



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내역 및 이유
12	2021.07.16	표 지	선사명 : “합자회사 목포대흥상사에서 “합자회사 대흥“으로 상호 변경
		제3조(안전관리 목표) 4항	4. 경제 운항을 “여객 및 화물보호”로 안전관리 목표 변경
		제6조(임직원 및 선원 의 책임과 의무) 4항	4. “및 정확한 화물 계측 실시”를 삭제하여 과승·과적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차량·화물 집계표 확인으로 변경
		제8조(안전관리조직도) ①	상호명 : “합자회사 대흥”으로 변경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 16항으로 중복 된 것 삭제하여 항 조정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①	4.과 6항 해당사항 없음으로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변경
		제18조(항해업무)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해양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붙임1] 항로도에 따라 운항한다. 로 변경
		제 18조의2(야간항해)	- 해당 없음으로 삭제
		제35조(유류 관리) ③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름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로 문구 수정
		제40조(해도관리)①②	①, ②항을 삭제하고 본선 운항항로(평수구역)에 맞게 변경 “본선은 평수구역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해당항로 해도는 AIS MONITOR로 대체한다.”로 변경
		제45조(규정의적용) ①②③	② ③항 삭제 (일부 중복)
		[붙임 1] 항로도	실제 운항항로(남강 - 가산)만 표시 로 변경
13	2021.12.14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무담당 변경 : 안전관리책임자 박기배에서 김광용으로, 해무담당 박종열에서 이용일로 변경
		[붙임11] 비상대응훈련 주기	추진기관 고장 훈련 및 충돌·좌초 및 전복훈련 - 현 매6개월을 매3개월로 변경
14	2022.01.18	[붙임10] 비상부서배치표	“비상신호 - 연속음 약30초”를 “연속음 30초 이상”으로 문구수정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2) 퇴선훈련요령중 (퇴선신호 - “퇴선신호 연속음 약 30초”를 “퇴선신호 연속음 30초 이상”으로 문구수정
		[붙임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퇴선신호 “연속음 약30초”를 “연속음 30초 이상”으로 문구 수정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선임안전관리책임자 박기배에서 김광용으로 조직도 변경
		제40조(해도관리)①②	“본선은 평수구역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해당항로 해도는 AIS MONITOR로 대체한다”를 삭제하고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로 변경
15	2022.12.7.	목차 제19조	제19조(입·출항 시 업무)→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으로 자구추가
		목차 제36조	제36조(종선~)→제36조(부속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으로 자구수정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제4항	④항 3. 선박의 정비계획 수립 및 집행 문구추가-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 ④⑤ 규정에 의거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선박치수(㎞) 53.28 × 11.2 × 3.0 → 선박치수(㎞) 63.1(L.O.A) × 11.2 × 3.0
		제18조(항해업무)	③ 1. 입·출항 시 → 입항·출항 시로 자구추가,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18조(항해업무) 제5항 3.	3. 항로상의 위험구역 나. 사격 및 훈련구역 : R-148A(침해안 불무기도 부근) 34-45-34.0N,126-13-24.0E중심반경 2.4마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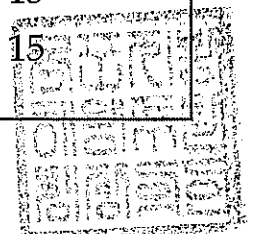
	라. 1) 목포 VTS : 목포 VTS... 2) 삭제 사유:운항항로상 해상사격훈련 누락 운항항로상 관제구역 누락 다. 2)의 경우, 해당구역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명시된 통항 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에 해당하지 않음
제18조(항해업무)제5항 4,	4. 선장이 위치 보고를 해야하는 장소 가. 출항 시 연번보고지점위도·경도보고처 1남강34-48-06N 126-07-08E목포운항관리센터 2가산34-45-07N 125-59-09E목포운항관리센터 → 연번보고지점위도·경도보고처 1남강34-48-06N 126-07-12E목포운항관리센터 2가산34-45-59N 126-00-03E목포운항관리센터

사유:위도, 경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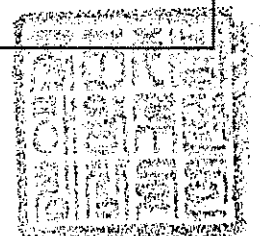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입항·출항 시 업무로 자구수정, 사유: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20조(통신업무) 제2항	㉔ 보고종류,보고시기, 보고내용 삭제 사유:출항보고 시 위험물 종류와 그 수 량 보고 내용이 있어 중복
제22조(여객준수사항의 전달)	㉔ 4. 입·출항 시→입항·출항 시로 자구수정 사유: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제25조 위험물 등의 취급	3. (위험물 보관장소 : 선미 좌현 창고) 문구추가 사유:위험물 보관장소 표기
제29조(비상대응)제5항 비상상황 연락기관	비상상황 연락기관 수정 사유: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에서 운항관리센터로 보고 하나, 보고계통 누락
제 29 조 (비 상 대 응) ㉔ 항 [비상조직도 및 임무]	구호반 실질적인 담당부서로 지정 영업→여객으로 변경
제34조(선내정비 및 점검 등)제7항	㉔ 호중, 항해 등→중, 항해등 으로 자구수정, 선박설비규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붙임4(구명/화재 제어도)	휴대식 분말소화기(6kg) Upp Dk 7→8, Nav. Dk 2→1, 휴대식 CO2 Upp.Dk 1 →0, Nav. Dk 0→1로 수정, 사유:소화기 수량은 일치하나 위치 상이함
[붙임8]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별지 제1호, 2호 서식참조) 변경 사유: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
[붙임9] 선박계획정비표 (9-4)	0 (갑판부) 월별 점검표 소화기 2. 작동상태 확인→외관상태 확인으로 문구 수정 사유: 소화기 작동상태는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외관상태 이상 유 무 확인이 적절
[붙임9] 선박계획정비표 (9-6)	0 (갑판부) 분기별 점검표 신호탄 1 로켓낙하산신호 및 자기발연부신호 보관 (유효기간 등)상태 확인 사유: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명칭과 오기 수정
[붙임13]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연번장비시설수량설치장 소 소화15휴대식소화기 (분말,포말, 물)19선체각 부 소화15휴대식소화기 (분말,포말, CO2)24선체각 부 [붙임4] 구명/화재 제어도 종류와 수량 일치
[붙임16] 내부심사절차서	1) 시작회의 ~아래 사항을 협의한다. 문구추가, 밑에 ~을 협의한다는 삭제

목 차

제1장 목적 및 정의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제3조(안전관리 목표)	2
제4조(안전관리 방침)	2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3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3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3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3
제8조(안전관리조직)	3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4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4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5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6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6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7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7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7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7
제15조(채용·배승관리)	7
제16조(인수인계)	8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8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8
제18조(항해업무)	9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12
제20조(통신업무)	13
제21조(여객업무)	15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16
제23조(화물관리)	17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18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19
제26조(정박 및 계류)	19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20
제8장 비상상황 대응	20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20
제29조(비상대응)	20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23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23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24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24
제33조(육상설비 점검)	25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25
제35조(유류관리)	25
제10장 자료관리	26
제36조(문서관리)	26
제37조(문서생산 등)	27
제38조(문서관리대장)	27
제39조(문서의 폐기)	27
제40조(해도관리)	27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27
제41조의2(여객선 안전정보 공개)	27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28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28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29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29
제45조(규정의 적용)	29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8]	31~69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조사 또는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운항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하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의 항로도(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다.



12. “차량적재도”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부대행검사가관(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인한 차량의 배치 및 적재 방법 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한다.
13. “화물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화물의 적재한도”란 「선박안전법」 제28조의 복원성 유지 및 제12호의 차량적재도 등에 따른 차량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선내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적재중량을 말하며 운항관리규정 심사 시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5.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 ·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6.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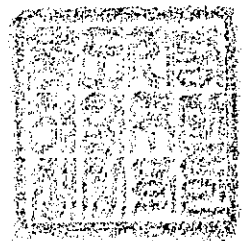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
2.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3. 고객만족
4. 여객 및 화물보호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대 고객 서비스 강화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과승·과적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차량·화물 집계표 확인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운송방법 숙지 및 관련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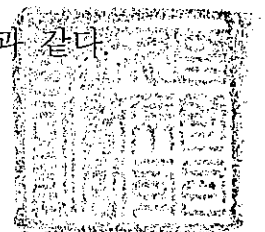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 ② 본사(주된 사업소)와 지점(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주된 사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합) 대흥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2번지	061-244-9915 (061-245-0154)

나. 관할구역

- 전향로 / 전구간 (총괄)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전향로 안전운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여객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

2. 지점(영업소)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 락 처
합) 대흥	신안군 암태도(남강)	061-271-9917
	신안군 비금도(가산)	061-275-6037

나. 관할구역

- 지점 관할 항내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지점 관할 구역 내 여객 및 매표소, 선착장 시설 등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 18와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즉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 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한다.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을 확보한다.
4. 안전관련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을 지휘하고,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5.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선원을 지도·감독한다.
6.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7.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
8.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0.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이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11.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한다.
12.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13.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기타 비상대응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14.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선원 및 육상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5.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검한다.

16. 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본사에 근무하여야 한다. 여객선이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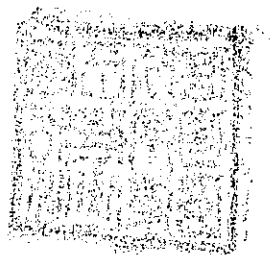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관리

② 화물담당자는 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물의 적재 및 하역에 관한 업무 총괄
2. 화물의 적재에 관한 선장·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협의 및 안전조치
3. 육상작업원에 대한 관리업무 총괄
4. 화물선적 작업완료 시 선장에게 화물목록 제출

③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4. 제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④ 공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및 선용품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3. 선박의 정비계획 수립 및 집행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과 화물 보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와 화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정권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 권한을 갖는다.
-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갑판원 또는 여객안전관리선원, 정비관리 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배승 관리)

-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원의 채용 및 배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채용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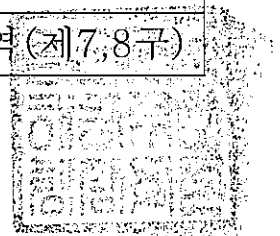
-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선장교대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1. 항해 기관 구명 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 증서
 - 5. 기타 주요 업무 등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 ① 여객선 대흥고속카페리호의 제원 및 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 중	진수일자	총 톤 수	기관출력
차 도 선	2011.07.15.	424톤	821KW x 2대
선박치수(m)	항해속력	항 로	항해구역
63.1(L.O.A) x 11.20 x 3.0	14.5노트	남강 - 가산	평수구역(제7,8구)



② 여객선 대흥고속카페리호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 : 354 명(여객 350 명, 선원 4 명)
2. 승무정원 : 4 명

제18조(항해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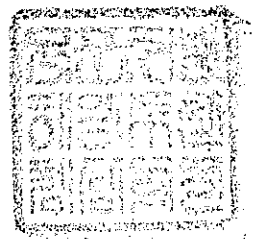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화물종류, 적하상태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및 일일 운항 종료 시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화물 적재상태
5. 여객 안전 확보 상태
6.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갑판원은 시계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항·출항시 및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 국제여객선터미널 남단과 삼학도 서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항에는 5노트 이내
 - 국제여객선터미널부터 장좌도 남단 등대까지 20노트 이내
 2.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한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하여야 한다.
-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항항로



항 로	출발지 (기점)	기항지	종착지 (종점)	항 해 속 력	항 해 거 리	운항시간
1. 남강-가산	남강	-	가산	14.0	6.8마일	40m(편도)

2.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종점 또는 기항지(위치)	거 리(마일)	비 고
1) 남강	가산	6.8	편도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간출암) 및 저수심

1) 암초 : 비금수도 (34-42-57N, 126-56-42E)

삼도부근 (34-46-18N, 126-03-00E)

2) 저수심 : 노대도 남단(34-45-54N, 126-02-42E) 중앙대교 서방(북방위 표지)

나. 사격 및 훈련구역

: R-148A(서해안 불무기도 부근) 34-45-34.0N, 126-13-24.0E

중심반경 2.4마일 이내

다. 어선조업·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1) 양식장 : 안좌·팔금도 수로에서 비금수도 구간

2) 협수로 : 안좌·팔금도 수로에서 비금수도 구간

라. 관제구역·통항분리수역·특정해역

1) 목포 VTS : 목포 VTS - 목포항 ~ 변도등대

마.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1) 교 각 : 중앙대교(암태도/팔금도)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장소

가. 출항 시

연번	보고지점	위도, 경도	보고처
1	남 강	34° 48' 06" N 126° 07' 12" E	목포운항관리센터
2	가 산	34° 45' 59" N 126° 00' 03" E	목포운항관리센터

나. 입항 시

출항 시 보고지점과 동일지점에서 운항관리센터에 보고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 간
가. 항구를 출입할 때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목포항 또는 선장이 선정한 안전한 해역

나. 기상악화 시 : 목포항 또는 선장이 선정한 안전한 해역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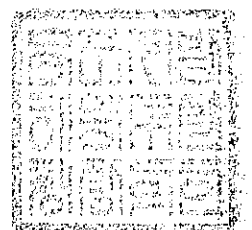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해양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붙임1] 항로도에 따라 운항한다.

-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 속	파 고	가시거리
최대 13m/s 이상	최대파고 2.5m 이상	1km 이내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정박하여야 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5.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6.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7.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붙임8」에 따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



(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 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취급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선수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목포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항로도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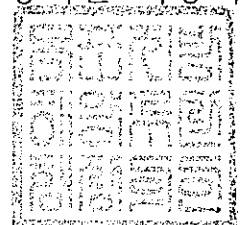


보고종류	보 고 시 기	보 고 내 용
출항보고	출항 후 10분 이내	1. 출항시간, 출항항 및 목적항 2. 선원수(승선하여야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3. 승선인원, 하선인원 및 최대승선인원 초과여부 4. 화물 적재량(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 가. 화물 나. 차량 5. 위험물 종류와 그 수량 6. 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ETA)
입항보고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2. 이상 유무
위치보고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위치보고지점 도착 시	1. 시간 및 위치 2. 현지 항로의 기상 3. 항로의 상태
출항 또는 운항 중지 보고	출항 또는 운항 할 수 없는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유
기타사항 보 고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한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이 있을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1. 전달받은 시간 2. 사실 내용
	중간기항지에서 여객이 승하선할 경우 등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수 2. 중간기항지 승선 여객수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지의 여객을 수송할 수 없게 된 경우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 수 2. 중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 수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현지 기상 및 해상상태와 위치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1. 사실 내용과 위치 2. 구조방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목포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진·출입시간 보고 시에는 항계 내에서는 “채널14”, 항계 외에서는 “채널16”으로 교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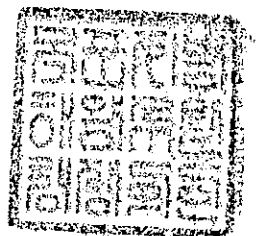
⑤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 ① 회사는 대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선수문 앞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 ③ 여객의 승·하선은 선수문을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선수문을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담당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 ⑦ 선장은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본선 선원 중 여객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 ⑨ 「해운법」 제21조의2에 제5항에 따른 승선권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⑩ 선내에서 승선권 발매 시 승선권의 해당란에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항 즉시 사무실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항시간별로 분리하여 수밀이 되는 용기에 보관 후 입항 즉시 사무실로 발송한다.
- ⑪ 선장은 차량적재 시 차량 내 승객이 절대 탑승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 ⑫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⑬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 「머리조심」 표지판을 부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자판기, 정수기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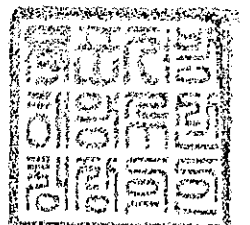
① 선장은 여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할 때에는 여객 승선 중 또는 승선 완료 직후에 모니터,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시범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객이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한국어 방송에 이어서 외국어로 방송한다.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여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하선 질서의 유지
2. 구명조끼, 구명설비 및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3. 비상대피로 파악 등 비상 시 행동요령
4. 항행시간, 해상상태 및 입항·출항 시 예정시간
5. 선내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의 취급방법
6. 여객이 소지한 위험물에 대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7. 해양긴급신고 번호 119
8. 기타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 등)

제23조(화물관리)

① 차량, 화물의 적재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의 적재한도 : 122.259톤

가. 차량의 최대 적재 수

차종 총수량	승용차		5톤	18톤	25톤	특수차량	
	소형	대형				6m'믹서트럭	20KL탱크로리
50	50	—	—	—	—	—	—
27	—	27	—	—	—	—	—
22	—	19	—	—	—	3	—
21	—	19	—	—	2	—	—
21	—	19	—	—	—	—	2
21	—	19	—	2	—	—	—
21	—	15	6	—	—	—	—

2. Permanent Ballast(고정발라스트) 중량 : 34.112톤(W.B.T P&S)
(승인된 복원성 자료에 따라 고정발라스트를 만재하여 운항할 것)

② 차량 및 화물의 고박장치 비치수량은 다음과 같다.

품명	수량	파단력/ 안전하중(S.W.L)	용도	보관장소
고박용 밴드	204	1.5	승용차고박용	우현선수 창고
	48	5.0	5톤이상 고박용	우현선수 창고

③ 선장이 일반화물 및 차량화물의 적재로 인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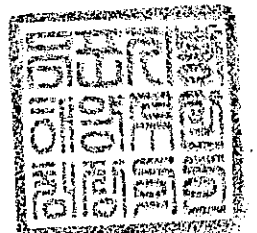
1. 차량의 적재방법은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선장은 적재화물(차량, 화물)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고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적재 시 선내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그 외의 장소(갑판, 통로)에는 화물을 적재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화물은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출항 5분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선장은 화물고박장치도(별첨 : 차량적제도)에 따라 일반(차량)화물의 적재상태를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 가. 차량간격은 600mm 이상이 되도록 적재한다.
 - 나. 차량구역 입구에는 차량적제도, 적재중량, 적재대수, 차량 적재 시의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다. 차량 갑판 내의 소방설비, 출입구, 계단 주위의 1m 이내에는 화물을 적재 하지 않는다.
 - 라. 기타 사항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7. 선장은 여객선 운항 중 선원이 차량, 화물의 고박상태 등 이상 유무를 매시간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은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물(차량)적제도를 차량갑판상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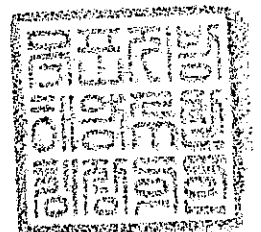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한다.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위험물 보관 장소:선미 좌현 창고)
4. 위험물 적재차량이 공(空)탱크인 경우 청소증명,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가스 안전증명이 있으면 선적할 수 있다.
5.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표시하고 일반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판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선적되거나 남아있는 화물의 상태 및 양, 배치
5. 선박폐수와 평형수 탱크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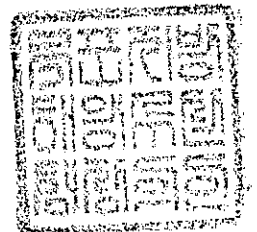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 「붙임10」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 「붙임3」 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조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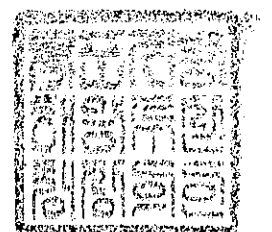
④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붙임 12」의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여객의 행동요령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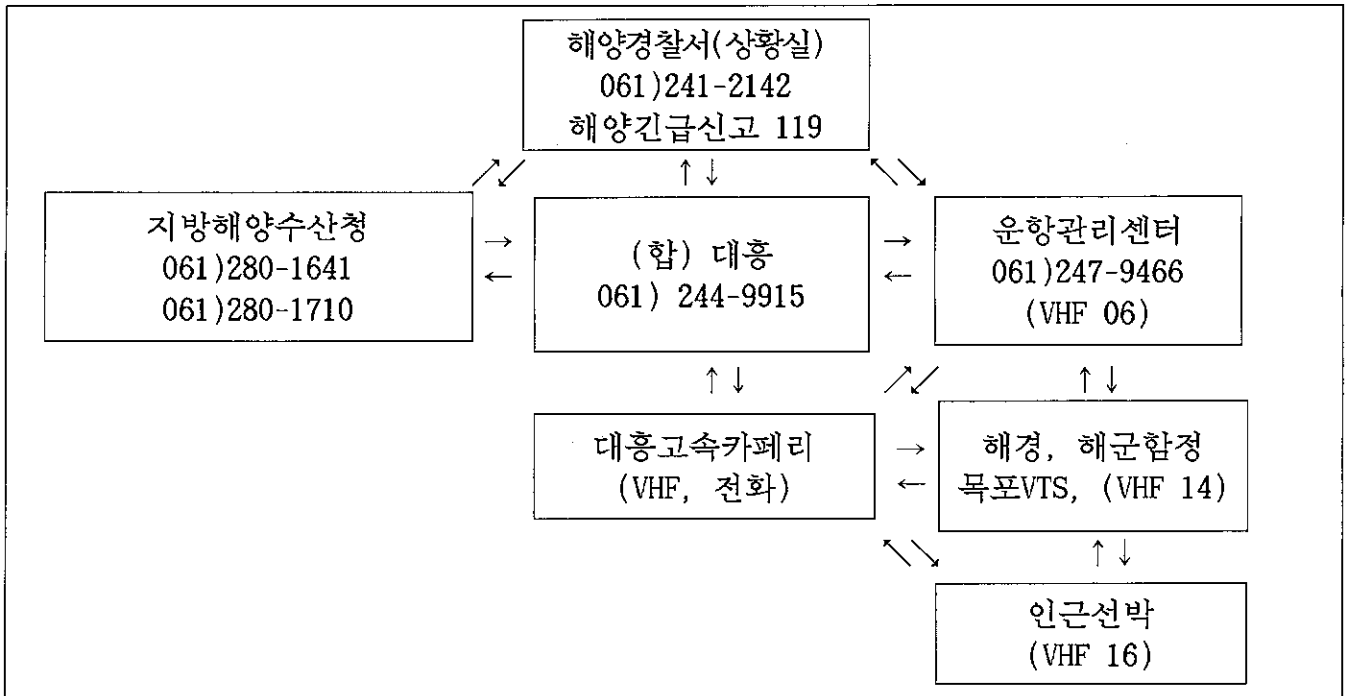
비 상 상 황		퇴 선	
1구역	2구역	1구역	2구역
차량구역 선미 좌우현	차량구역 선수 좌우현	차량구역 선미 좌우현	차량구역 선수 좌우현
기관장	갑판원	기관장	갑판원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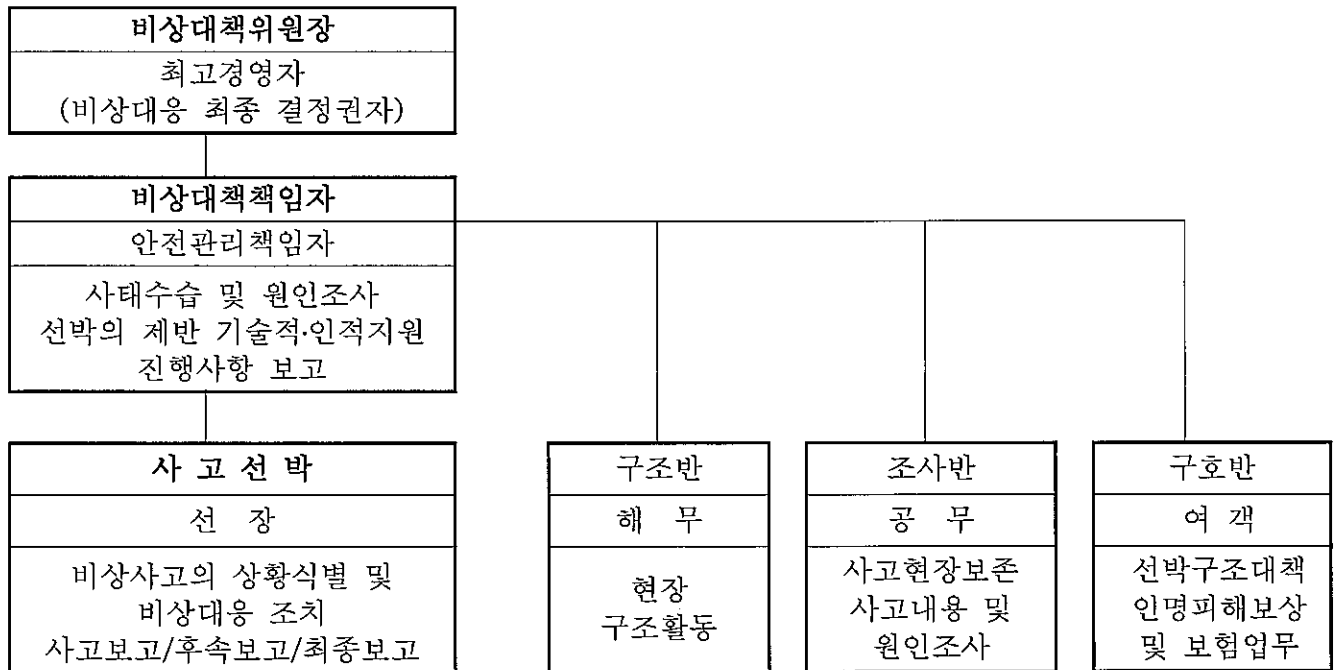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비상상황 연락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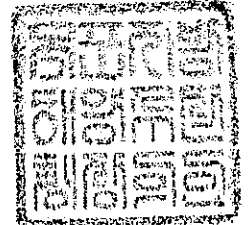


【 비상조직도 및 임무 】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한국병원(전화번호 061-270-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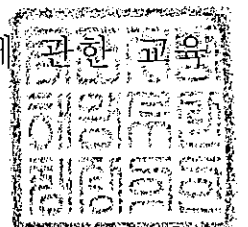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며 입항 후 필요시 또는 요청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 및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교관 요원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 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 훈련 및 교육 시행주기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주 기	대 상 자
선내숙지훈련			수시	모든 선원
해상인명 안전훈련	소방훈련		매 10일 마다	모든 선원
	퇴선훈련		매 10일 마다	모든 선원
해양사고 대응훈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대비 등		3개월	모든 선원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해상추락	6개월	모든 선원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6개월	모든 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 선원
기름유출 대처훈련			매월	모든 선원

⑤ 선원 법정교육은 「불임7」 과 같이 실시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를 운항 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정기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며, 「여객선안전관리 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검, 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목포 운항관리센터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3」 과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 「붙임9」 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및 하역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구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기적, 종 등의 비치상태 및 항해등의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구명, 소화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소, 긴급 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연락수단 확보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름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류 보급선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료관리

제36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항해사, 기관장으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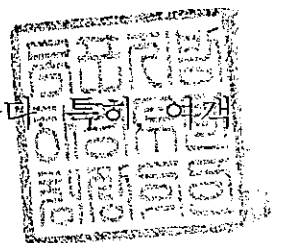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8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붙임15」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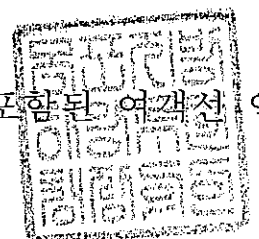
5.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조변경허가 대상을 말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2 (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 「해운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



전정보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 이력(「해사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 제19조제1항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내용
- ② 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를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고, 반기(半旗)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



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 「붙임16」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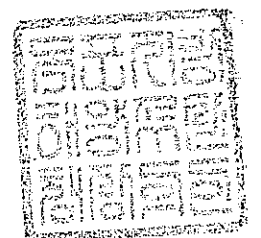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의2호가 목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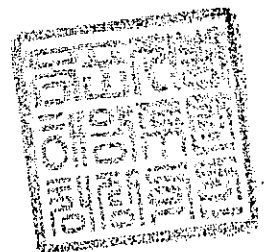
제45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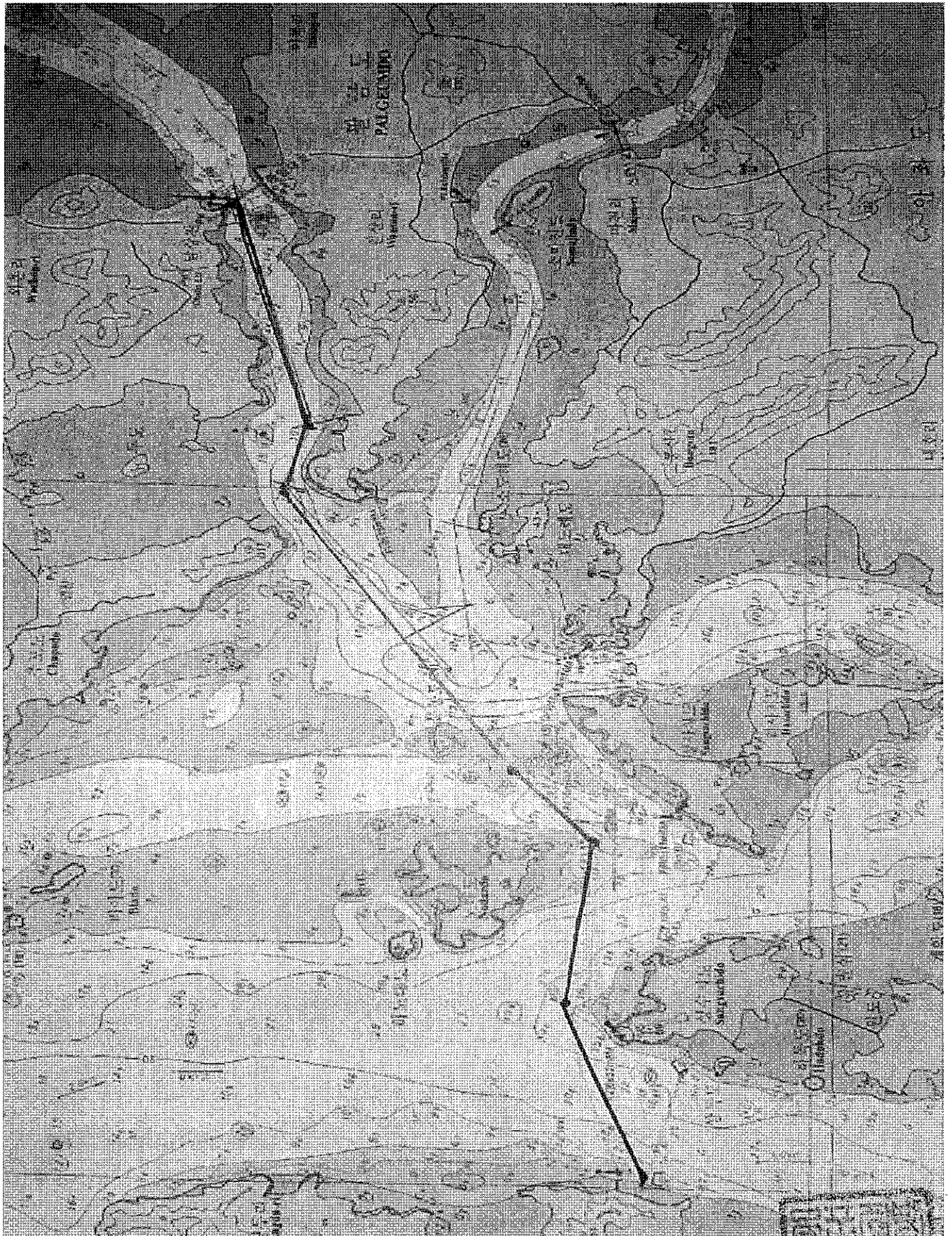


【불 임 참 고 자 료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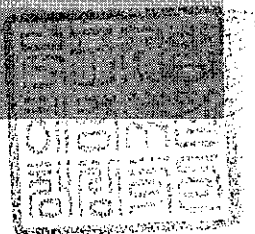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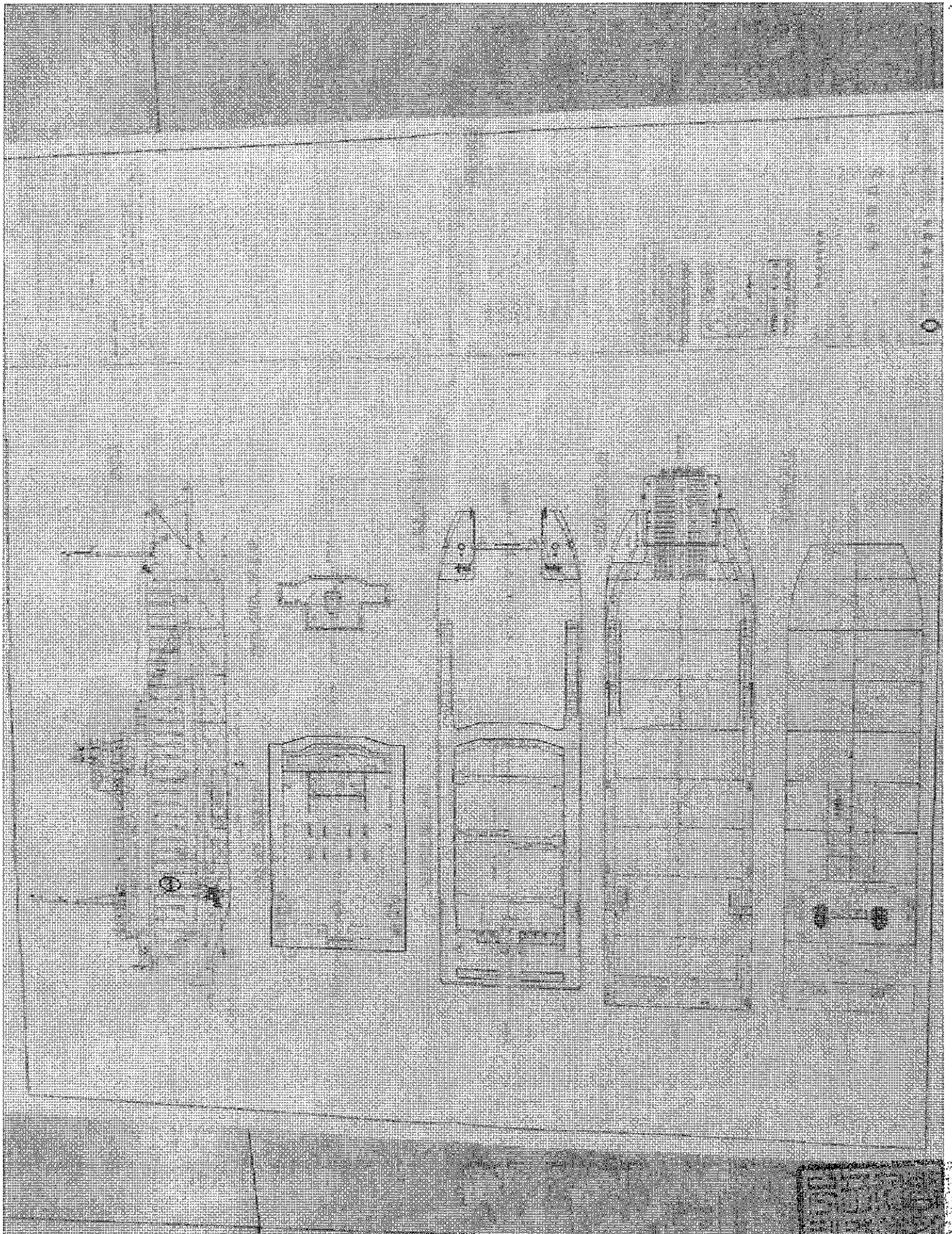
[불임 1] 항로도	- - - - -	31
[불임 2] 일반배치도	- - - - -	32
[불임 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 배치도	- - - - -	33
[불임 4] 구명 /화재제어도	- - - - -	34
[불임 5] 차량적재 및 고박장치도	- - - - -	35 ~ 40
[불임 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 - - -	41
[불임 7] 선원법정교육 목록	- - - - -	42
[불임 8]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 - - -	43, 44
[불임 9] 선박계획정비표	- - - - -	45 ~ 51
[불임 10] 비상부서 배치표	- - - - -	52
[불임 11]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 - - - -	53 ~ 60
[불임 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 - - -	61
[불임 13]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 - - - -	62
[불임 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 - - - -	63
[불임 15] 문서관리대장	- - - - -	64
[불임 16] 내부심사절차서	- - - - -	65, 66
[불임 17]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 - - - -	67, 68
[불임 18] 안전관리조직도	- - - -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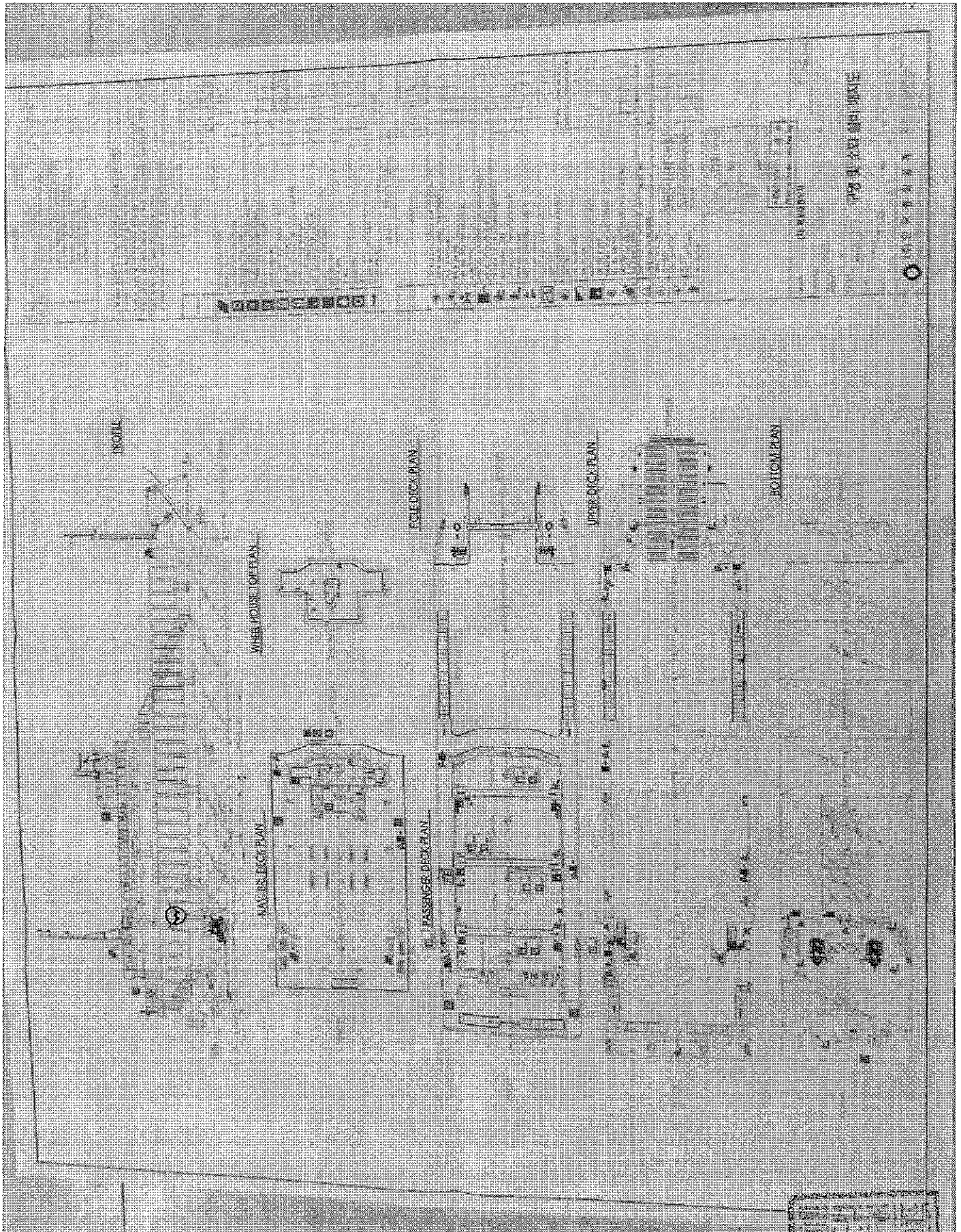
[붙임1] 항로도



[붙임2] 일반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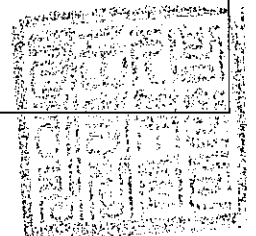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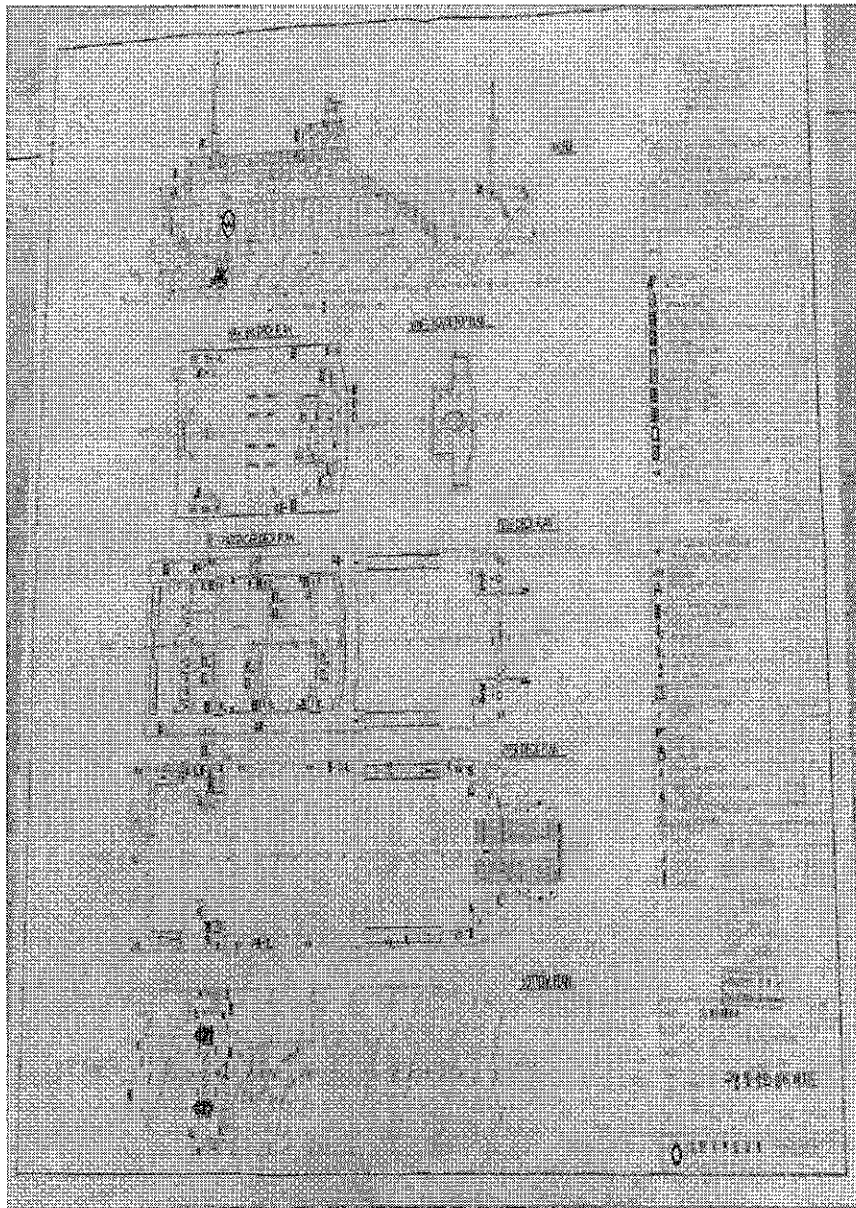
[붙임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 배치도[Safety / Fire Contro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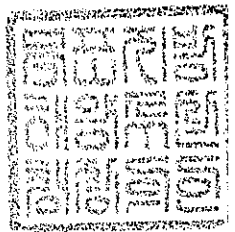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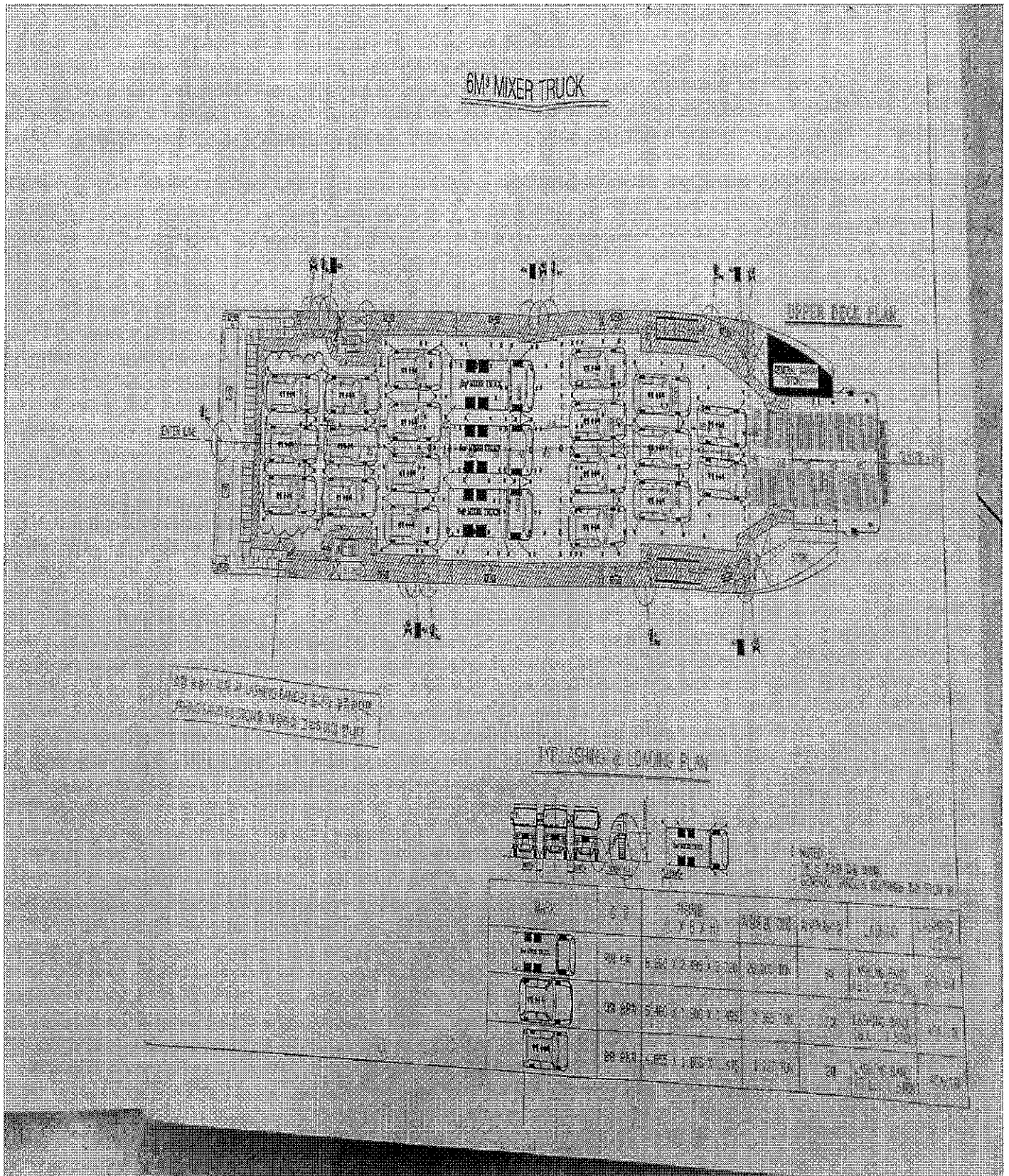
[붙임4] 구명 / 화재제어도[Safety / Fire Control Plan]

도형	소화기 종류	계	위치			
			Upp Dk	Pass. Dk	Nav. Dk	Bottom
【소화기】		24	8	6	2	8
 BL	이동식 포말소화기(45ℓ)	1	-	-	-	1
 P 6.5kg	휴대식 분말소화기 (6kg)	21	8	6	1	6
 Co2 6.8kg	휴대식 CO2	2	0	-	1	1
【소화장치】						
 4OA	소화전	11	5	3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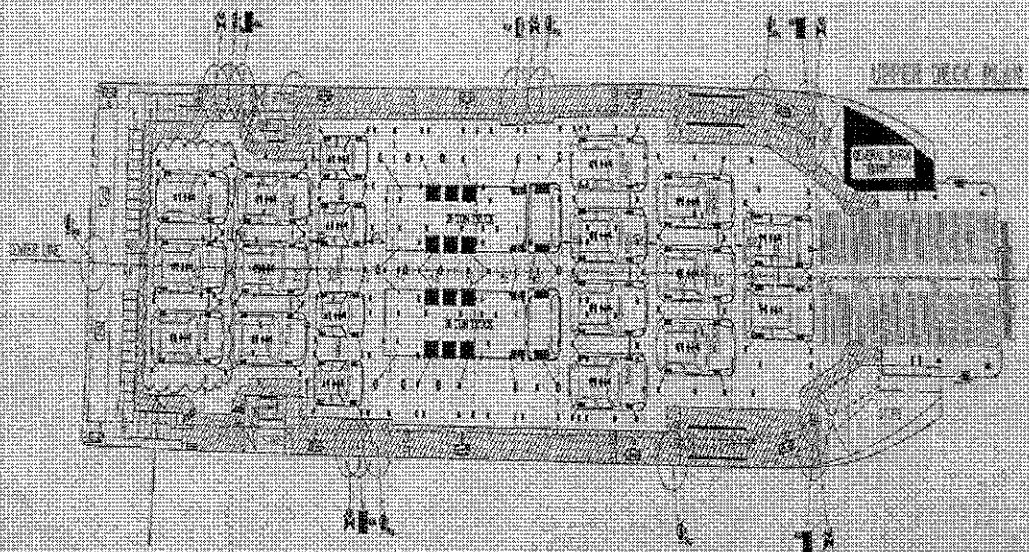
※선내 소화기(24개) 및 소화전(11개소) 현황 및 위치



[붙임5] 차량적재 및 고박장치도



25 TON CARGO TR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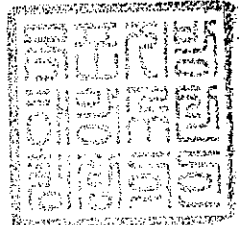


25 TON CARGO TRUCK
UPPER DECK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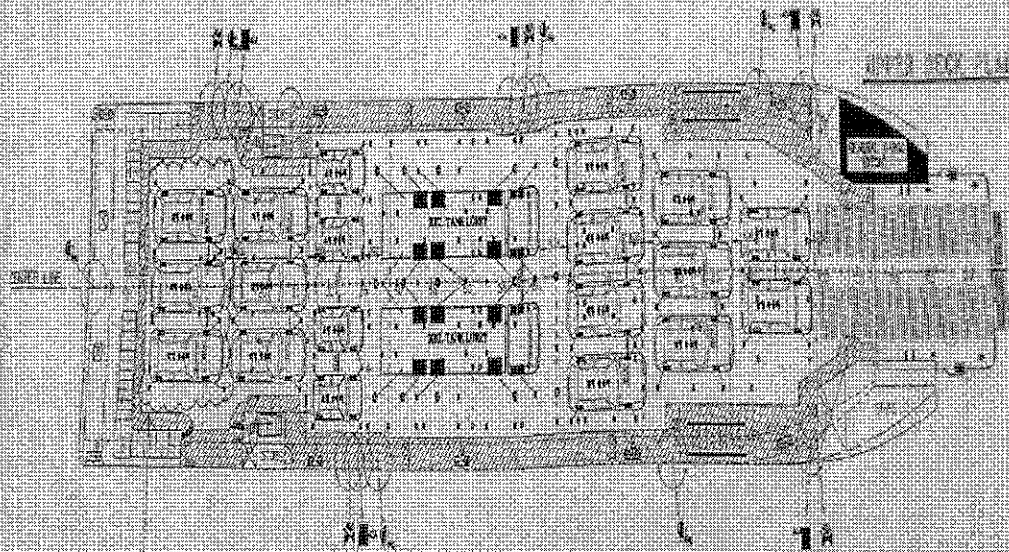
TRUCK LAYOUT PLAN



TRUCK	5.2	TRUCK	5.2	TRUCK	5.2	TRUCK	5.2	TRUCK	5.2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5 TON



20KL TANK LORRY



20KL TANK LORRY
20KL TANK LO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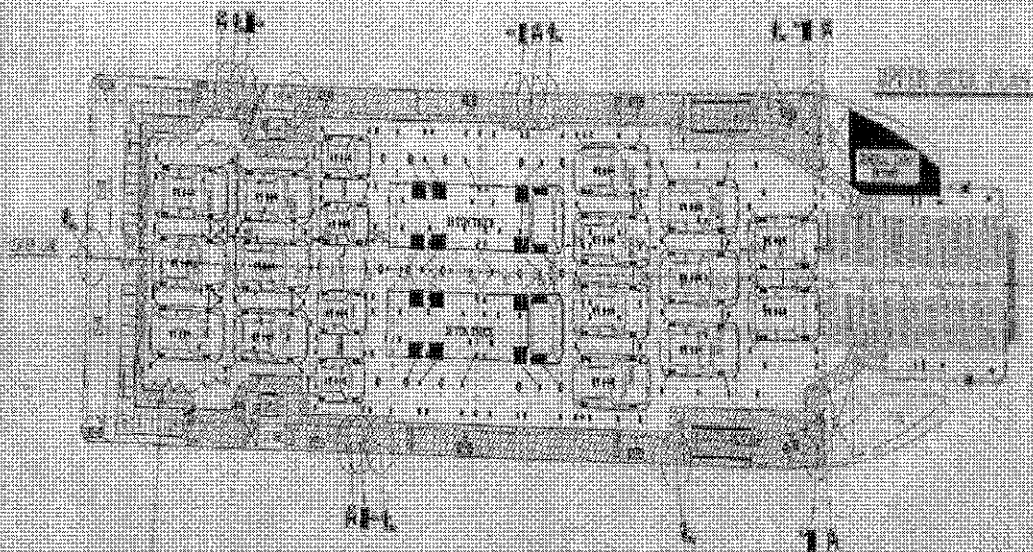
TYPICAL LOADING PLAN



TANK	TYPE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TANK LORRY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TANK LORRY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TANK LORRY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TANK LORRY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20KL



18TON CARGO TR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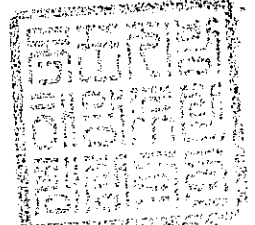


1. 18TON CARGO TRUCK
2. 18TON CARGO TR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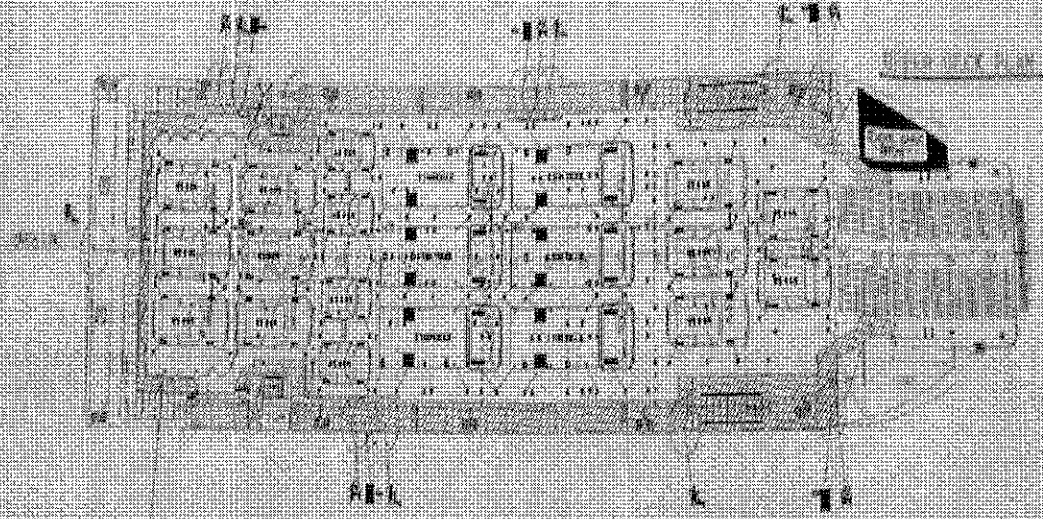
DISASSEMBL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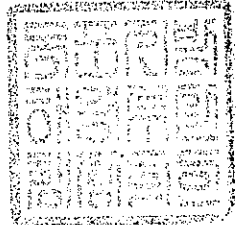
NO.	ITEM	QTY	REMARKS
1	ENGINE	1	18TON CARGO TRUCK
2	TRANSMISSION	1	18TON CARGO TRUCK
3	AXLE	1	18TON CARGO TRUCK
4	WHEEL	1	18TON CARGO TRUCK
5	CHASSIS	1	18TON CARGO TR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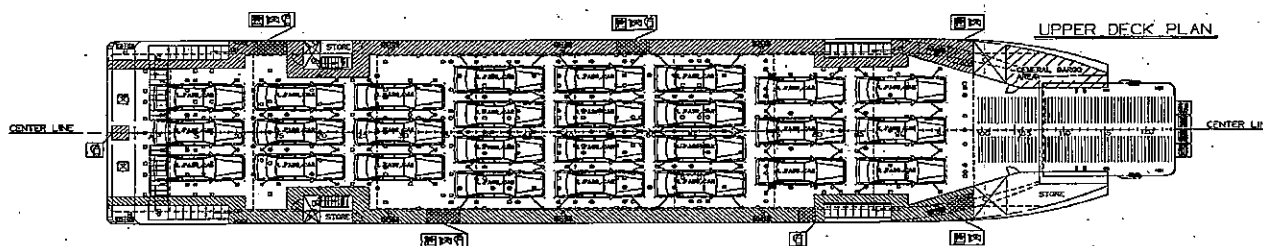


5 TON TRUCK



ITEM	QTY	DESCRIPTION	UNIT	PRICE	TOTAL
1	1	ENGINE	EA	1000.00	1000.00
2	1	TRANSMISSION	EA	500.00	500.00
3	1	AXLE	EA	200.00	200.00
4	1	WHEEL	EA	100.00	100.00
5	1	STEERING	EA	150.00	150.00
6	1	BRAKE	EA	100.00	100.00
7	1	CHASSIS	EA	1000.00	1000.00
8	1	TRUCK	EA	1000.00	1000.00
9	1	TRUCK	EA	1000.00	1000.00
10	1	TRUCK	EA	1000.00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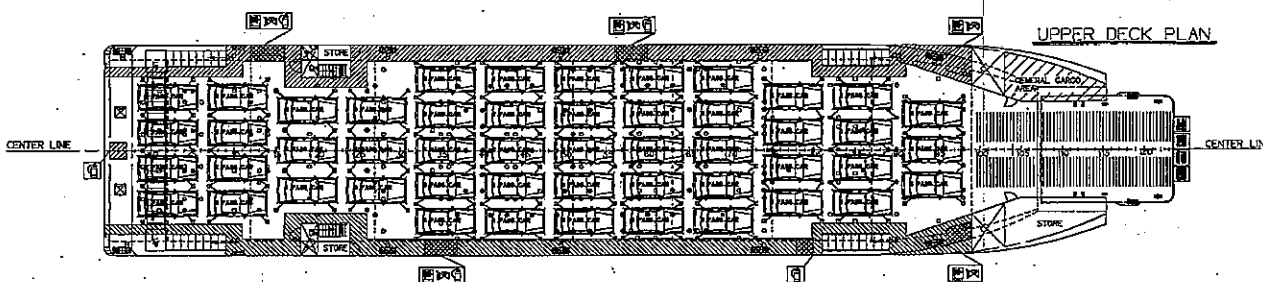


TYP.LASHING & LOADING PLAN



[NOTED]
- 'B'는 장소 값을 의미함.
- GENERAL GARDON의 직책은 아직 STON 임.

SYMBOL	TYPE	SPECIFICATION (L X B X H)	WEIGHT(TON)	LOADING Q'TY	LASHING TYPE	LASHING Q'TY
	木箱	5,450 X 1,900 X 1,455	2.355 TON	270	LASHING BAND (B.L.: 1.5TON)	4EA/1PC



TYP.LASHING & LOADING PLAN



[NOTED]
- 'B'는 최소 값을 의미함.
- GENERAL GARGO의 최대저장량은 2000 STON 인.

SYMBOL	TYPE	SPECIFICATION (L X B X H)	WEIGHT(TON)	LOADING Q'TY	LASHING TYPE	LASHING Q'TY
	28 88A	3.555 X 1.555 X 1.465	1.051 TON	503	LASHING BAND (L.L.: 1.5TON)	4E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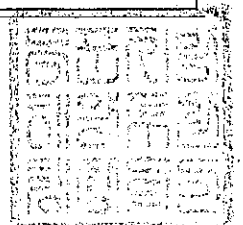
[붙임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별표 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 류	위 험 물	수량 및 질량
화약류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200개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400개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1kg
	도화선	3kg
고압가스	소화기, 약품류	2개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10kg
부식성 물질	축전지	2개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3kg
독물류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3kg
인화성 액체류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3kg
	도료, 가솔린, 등유	20kg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10kg
산화성 물질류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3kg
가연성 물질류	셀룰로이드	1kg
	안전성냥, 약품류	3kg
	캄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5kg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20kg
유해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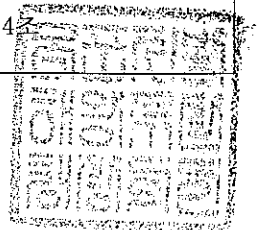
※ 비고

1. 수량 또는 질량은 1인당 휴대기준을 말하고, 질량은 용기 및 포장의 질량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위험물선박운송기준 [별표1] “위험물 목록”의 적재격리요건란에 적재방법 ‘D’ 및 “E”로 분류되는 위험물(휘발유 등), 화약류의 경우 적재방법 “03”, “04” 및 “05”로 분류되는 위험물(기준 제16조에서 정하는 화약류는 제외)은 여객선 적재가 금지된 위험물이므로 여객선에 적재할 수 없음.



[붙임7]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 육 명	구분 및 교육기간	유효 기간	관 련 법 령
기초안전교육	4.5일/재교육 2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안전교육	구명정(재) / 3(0.5)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소화(재) / 3(1)일	5년	
	응급처치(재) / 3(0.5)일	5년	
	고속구조정 / 1일	5년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5년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정규 / 3일	5년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 시행령 제 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재·보충 / 2일	5년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션 / 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레이더 / 2일	없음	
선교자원관리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기관실자원 관리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교육	기초(재) / 2(1)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재) / 4(2)일	5년	
여객선 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의료관리자 교육	자격취득교육 / 5일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보수교육 / 2일	5년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기사반 / 5일	없음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없음	
면허갱신교육	3급 이상 / 3일	5년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급 이하 / 2일	5년	
	통신 / 1일	5년	
당직부원교육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면허전환교육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리더쉽 및 팀워크교육	최초로 여객선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항해사,기관사,운항사또는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	없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부칙1조, 부칙4



[붙임8]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1/2
2022년 월 일 시 분 출항										
선 명						선박번호				
항로 및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시간 분		
홀 수	선수(船首): m, 중앙: m, 선미(船尾): m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명		여객	명		선원	명		임시 승선자	명
실제 승선인원	()명	여객	()명		선원	명	임시 승선자	명		
			대인	명						
			소인	명						
			유아	명						
화물의 적재한도 (운항관리규정)	M/T									
실제화물 적재증량 (화물집계표)	()M/T					차량화물 대		M/T		
						일반화물		M/T		
						컨테이너 개		M/T		
위험화물 [차량 및 수하물(手荷物)]	위 치	종 류			수 량		보관형태		특징/비고	
	지정장소 (선수창고 등)									
	화물창									

※ 일반카페리선박에 한해 G₀M 등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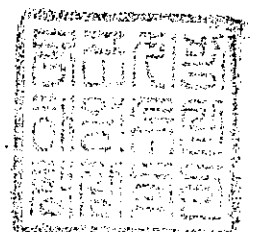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2/2

선 명	선박번호	점검결과		비 고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1. 선장·기관장 및 운항관리자				
가.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나.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	☐	
다. 운항관리규정상 법정승무원의 승선을 확인하였는가?		☐	☐	
라. 선교 항해·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 레이더 ☐ 컴퍼스 ☐ GPS ☐ AIS ☐ 음향측심기 ☐ 항해등 ☐ 조타기 ☐ 선내 방송설비 ☐ VHF ☐ 기적 ☐ e-Nav 시스템 ☐ 전자해도시스템 ☐ 그 밖의 설비()		☐	☐	
마. 주기 및 발전기, 그 밖의 기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운전상태 또는 사용 준비 상태 확인 - 연료유공급탱크 채움 등 필요한 연료유 확보 확인		☐	☐	
바. 기관실 내 위험요소는 제거 되었는가? ☐ 이동물 고정 ☐ 인화·발화물질의 이동보관, 격리, 제거 ☐ 누수·누유 여부 등		☐	☐	
사. 선내 소화·구명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구명조끼, 소화기 등은 표본 점검 가능		☐	☐	
아. 통로 장애물 유무 확인 등 비상탈출로는 확보되었는가?		☐	☐	
자. 선체상태, 만재흡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평형수 적재 가능한 일반카페리의 경우 복원성(GoM 등) 추가 확인		☐	☐	
차. 화물구역의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 되었는가?		☐	☐	
카. 선내 위험물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 되었는가?		☐	☐	
타. 여객명부 및 화물목록을 본선에 수령 하였는가?		☐	☐	
파. 선원이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자에 한정하여 육안점검 등 시행		☐	☐	
2. 선장·기관장				
가. 갑판설비 등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계선설비 ☐ 양묘(揚錨)설비 ☐ 스러스터(Thruster) ☐ 그 밖의 설비()		☐	☐	
나. 선박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	☐	
다. 타기실 내 누수·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라. 여객실 등 여객구역에 구명조끼 등 비품이 비치되어 있고 청결한가?		☐	☐	
마. 승무원이 각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	☐	
바. 육상 작업원 등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결합사항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 장		(인)
선장 등과 위 내용을 점검 및 확인합니다.				
		운항관리자		(인)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붙임9] 선박계획정비표

선박계획정비표 (9-1)

○ (갑판부) 일별 점검표

○ 선 명 : 대흥고속카페리호

20 년 월

	점 검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주기관 및 추진기 작동상태 점검															
2	통신기기 작동상태 점검															
3	레이다 작동상태 점검															
4	선내 통신장비 작동상태 점검															
5	선내 방송장치 작동상태 점검															
6	비디오 장치 작동상태 점검															
7	기적, 중 작동상태 점검															
8	항해등 작동상태 점검															
9	항해일지 기록상태 점검															
점 검 자 (서명)																
※ 비 고 (부적합사항 발생시 조치 및 처리 내용등 자세히 기록)																

“0” : 양호, “△”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선 박 계 획 정 비 표 (9 - 2)

○ (기관부) 일별 점검표

○ 선 명 : 대흥고속카페리호

20 년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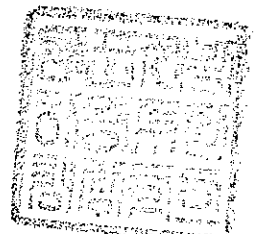
	점 검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기관실 & 타기실 빌지 발생 점검															
2	기관실 밧데리 전압상태 점검															
3	주기관, 발전기 윤활유량 점검															
4	주기관, 발전기 연료유(연료탱크)량 점검															
5	시동 및 통신용 밧데리 충방전 상태 점검															
6	주기관, 발전기 냉각수량 점검															
7	연료유탱크 물혼입 점검															
8	감속기 윤활유량 점검															
9	기관실 환기팬 작동 상태 점검															
10	분뇨 저장(처리) 탱크 배출펌프 작동상태 점검															
11	선내 에어컨 장치 작동 점검															
12	위생수 & 청수펌프 작동 점검															
13	청수 탱크량 점검															
14	객실 조명설비 점검															
15	기관일지 기록상태 점검															
점 검 자 (서명)																
※ 비 고 (부적합사항13 발생시 조치 및 처14리 내용등 자세15히 기록)																

"O" : 양호, "△"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선 박 계 획 정 비 표 (9 - 3)

○ (기관부) 주간 점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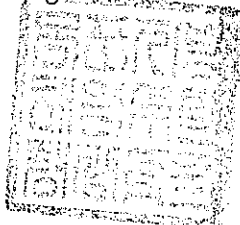
○ 선 명 : 대흥고속카페리호

20 년 월

	점 검 항 목	1 주 점검일/ 점검결과	2 주 점검일/ 점검결과	3주 점검일/ 점검결과	4주 점검일/ 점검결과	5주 점검일/ 점검결과
1	주기관, 발전기 공기 필터 커버 점검 (필요시 청소)					
2	소화펌프 및 모터 베어링 구리스 점검 (필요시 주입)					
3	배터리 전압 확인(외부상태 포함) (항해/통신용, 비상용)					
4	선내 에어컨장치 흡입공기 필터 점검(필요시 청소)					
5	비상등 작동 점검					
6	에어컨 냉매 누설 점검					
7	유수분리기 작동 점검 및 오일 감지센서 점검					
8	화장실 배출환기 팬 흡입구 청소					
점 검 자 (서명)						

“0” : 양호, “△”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 47 -

선박계획정비표 (9-4)

○ (갑판부) 월별 점검표

○ 선 명 : 대흥고속카페리호

20 년

장비명	점검항목	1 월 점검일/ 점검결과	2 월 점검일/ 점검결과	3 월 점검일/ 점검결과	4 월 점검일/ 점검결과	5 월 점검일/ 점검결과	6 월 점검일/ 점검결과
소화기	1 핸들 고정핀 상태 확인						
	2 외관상태 확인						
	3 비치 및 수량 확인						
구급상자	1 구급약 비치 확인						
비상 탈출구	1 위치표시 확인						
	2 조명상태 확인						
화장실	1 हे수 흡입구 상태 확인						
	2 플로트(자동) 상태 확인						
	3 푸쉬버튼 상태 확인						
	4 출입문 핸들 및 잠금장치 상태 확인						
객실출입문	1 손잡이 상태 확인						
	2 잠금장치 상태 및 주유상태 확인						
	3 수밀 고무패킹 상태확인						
양묘기	1 유압유 양 및 상태 확인						
	2 유압유 필터 상태 확인						
	3 전원 스위치 작동상태 확인						
	4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 확인						
	5 앵카 & 체인 마모상태 확인						
	6 앵카 고정 스톱퍼 상태 확인						
객실현창	1 리벳 또는 실리콘 상태 확인						
	2 균열개소 확인						
비상등	1 비상등 식별표시 여부 확인						
	2 전구 및 카바 파손 확인						
	3 전구 밝기 확인						
	4 작동상태 확인						
폐기물기록부	1 작성상태 확인						
	2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점 검 자 (서명)							

"0" : 양호, "△"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선 박 계 획 정 비 표 (9 - 5)

○ (기관부) 월별 점검표

○ 선 명 : 대흥고속카페리호

20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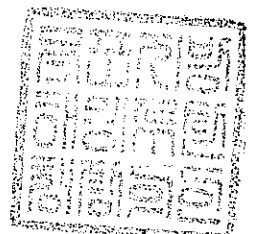
장비명	점 검 항 목	1 월 점검일/ 점검결과	2 월 점검일/ 점검결과	3 월 점검일/ 점검결과	4 월 점검일/ 점검결과	5 월 점검일/ 점검결과	6 월 점검일/ 점검결과
주기관	1 윤활유 & 연료유 필터 점검 (필요시 교환)						
	2 고정 볼트 풀림여부 확인						
	3 에어크리너 청소						
	4 씨체스트 스트레이너 청소						
발전기	1 윤활유 & 연료유 필터 점검 (필요시 교환)						
	2 고정 볼트 이완여부 확인						
	3 에어크리너 청소						
펌프	1 위생수 해수펌프 메카니컬 씰 누수 확인						
	2 청수펌프 메카니컬 씰 누수 확인						
	3 소화펌프 메카니컬 씰 누수 확인						
	4 발라스트펌프 메카니컬 씰 누수 확인						
기름기록부	1 작성상태 확인						
	2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점 검 자 (서명)							

“0” : 양호, “△”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선 박 계 획 정 비 표 (9 - 6)

○ (갑판부) 분기별 점검표

○ 선 명 : 대흥고속카페리호

20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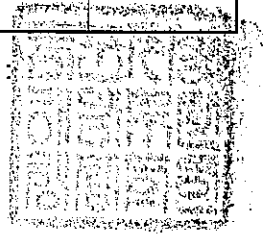
장 비 명	점 검 항 목		1분기 점검일/ 점검결과	2분기 점검일/ 점검결과	3분기 점검일/ 점검결과	4분기 점검일/ 점검결과
구명부기	1	고정 로프 상태 확인				
	2	손잡이 및 역반사지 상태 점검				
구명조끼	1	청결 건조상태 확인				
	2	호각 상태 확인				
	3	비치 수량 확인				
	4	손상여부 확인				
구명부환	1	Line 상태 확인				
	2	비치수량 확인				
	3	이탈 장치 확인				
	4	손상여부 확인				
신 호 탄	1	로켓낙화산신호 및 자기발연부신호 보관(유효기관 등)상태 확인				
자기점화등	1	보관상태 확인				
	2	배터리 상태 확인				
	3	램프 상태 확인				
국제신호기	1	보관상태 확인				
	2	수량 확인				
소방원 장구 세트	1	보관상태 확인				
	2	자장식 호흡구 상태 확인				
	3	공기 충전압력 확인				
	4	방화복 비치 수량 확인				
	5	방화장화 및 장갑 비치수량 확인				
	6	구명줄 비치 확인				
	7	방폭등 비치 수량 확인				
	8	작동상태 확인				
소 화 전	1	밸브 개폐상태 확인				
	2	호스 및 만능노즐 상태 확인				
	3	호스 연결부 접속 확인				
자기 나침의	1	자차 확인				
	2	기포 발생 여부 확인				
계선색	1	손상여부 확인				
	2	마모여부 확인				
	3	보관상태 확인				
점 검 자 (서명)						

"O" : 양호, "△"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선박계획정비표 (9-7)

○ (기관부) 분기별 점검표

○ 선 명 : 대흥고속카페리호

20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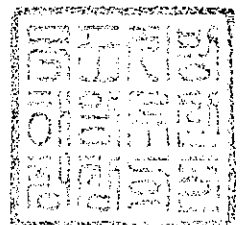
장 비 명	점 검 항 목		1 분 기	2 분 기	3 분 기	4 분 기
			점검일/ 점검결과	점검일/ 점검결과	점검일/ 점검결과	점검일/ 점검결과
주기관	1	흡·배기밸브 타펠트 간극 점검(필요시)				
	2	연료분사노즐 연소상태 확인(필요시 교환)				
	3	안전장치(알람) 점검				
발전기	1	흡·배기밸브 타펠트 간극 점검(필요시)				
	2	연료분사노즐 연소상태 확인(필요시 교환)				
	3	안전장치(알람) 점검				
감속기	1	윤활유 및 휠터 점검(필요시 교환 및 소제)				
댐퍼	1	기관실 팬 댐퍼 및 개폐핸들 고착 점검				
위생수 펌프	1	그랜드패킹 점검후 필요시 보충 또는 교환				
각분전반 및 펌프	1	절연저항 점검				
배터리 충전기	1	기능 점검				
양묘기	1	유압펌프 유압유 양 점검 및 Filter 점검				
조명	1	객실조명 상태 및 불량품 교환				
점 검 자 (서명)						

“O” : 양호, “△” : 보통, “X” : 불량

최종점검자 직책 :

성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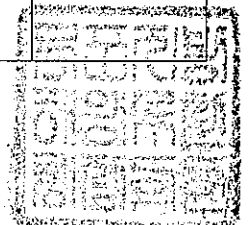
서명 :



비 상 부 서 배 치 표

▷선명 : 대흥고속카페리

구분 \ 상황		소화·폭발	퇴 선	해양오염	인명구조	비상조타	충돌·좌초	기관고장
위치	직책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임무 및 휴대품
선 교	선 장	총지휘, 대외업무 조타 및 신호업무	총지휘, 대외업무, 신호업무 중요서류, SART	총지휘, 대외업무 조타 및 신호업무	총지휘, 대외업무 조타 및 신호업무	총지휘, 대외업무 조타 및 신호업무	총지휘, 대외업무 조타 및 신호업무	총지휘, 대외업무 조타 및 신호업무
기 관 실	기관장	현장지휘 소화펌프 작동 전원·통풍 차단 고정식 소화장치작동	전원·연료 차단 수밀문 폐쇄, / 기관일지	현장지휘 오염원차단	기관당직	기관당직	현장지휘 손상현황 파악	기관수리
현 장	갑판원	여객유도 소화·구조 작업 방화복 착용	여객유도, 구명기구 진수 / 로프	방제작업 / 방제자재	구조작업 / 구명부환	타기실 비상조타요원	선수부 투묘준비	선수부 투묘준비
	기관원	소화·구조 작업	여객유도, 구명기구 진수 / 담요	방제작업 / 방제자재	구조작업 / 구명부환	비상조타 지원	침수방지 수리작업	수리작업
비상신호		비상배치신호 :  (단음 7회후 장음 1회) 비상해제신호 :  (장음 1회 단음 1회 3회 연속반복) 항계내 화재신호 :  (장음 5회 반복) 퇴 선 신 호 :  (연속음 30초 이상) 기타 비상신호 :  (장음 3회 후 비상배치 방송 : 00구역 00발생 전원 비상배치)						
비 고		전 승무원 소화현장 집결시 소화기 휴대	전 승무원 구명조끼/ 안전모 착용		발견즉시 구명부환 투하, 선내 경보			



[붙임11]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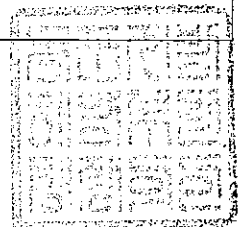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훈 련 명	시 행 주 기
선내 숙지교육	수 시
소화 및 퇴선 훈련	매 10 일
기름유출대처 훈련	매 월
비상조타 훈련	매 3개월
인명구조 훈련(해상추락, 밀폐공간에서의 구조)	매 6개월
추진기관 고장 훈련	매 3개월
충돌·좌초 및 전복 훈련	매 3개월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비상상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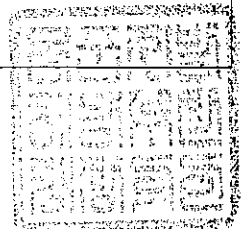
구분	비상상황 유형	보 고 기 준
1.	소화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써,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능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퇴선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3.	비상조타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 자체수리 여부, 타 선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한다.
4.	인명구조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 사항 포함
5.	기름유출대처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방지 및 유출된 기름의 수거
6.	충돌·좌초 및 전복	충돌로 인한 파손 부위의 확인 및 침수 방지와 전복으로 인한 비상대응 훈련
7.	추진기관 고장	신속한 보고와 효과적인 선조치를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비상투묘
※ 통신유지 사항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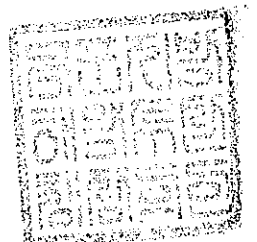
1) 소화훈련요령

- 화재사실을 인지한 최초 발견자는 “00장소에서 xx급 화재발생” 이라고 소리를 질러(또는 비상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며,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최대 활용 등 화재초기 조치를 한다.
- 선장은 여객 동요방지를 위해 화재상황을 간략하게 방송 후 화재현장이 풍하쪽으로 위치하도록 조선했다.
- 갑판원은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초동진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필요시 자장식호흡구는 갑판원이 착용]
- 현장에 투입한 갑판원은 소화기로 초기진화가 어려울 시 선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 소화기 등으로 화재진압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 상황식별 : 화재종류, 화재위치, 현재 선위, 기상조건 등 파악(풍향, 풍속, 파고, 조류 등)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선박 확인
- 또한, 선장은 VHF,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화재발생 현황 및 본선조치사항, 구조필요성 여부를 요청하여야 한다.(해양긴급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
- 기관장은 소화범위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소화작업에 임한다.
[화재현장의 전원차단, 통풍기차단 및 적절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그리고 인접 격벽에 살수(화재확산 방지)]
- 갑판원은 소화전에 소화호스를 연결하고 화재종류에 따라 살수 등 조치한다.
- 선장으로부터 화재상황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지원요청에 대한 관련 기관에 보고 및 소방선 수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진화가 완료되면 선장은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한 후 갑판원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선장에게 보고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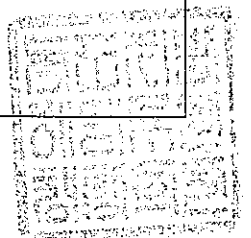
2) 퇴선훈련요령

- 선장은 본선의 상황에서 퇴선 결정을 하면 비상배치신호(단음7회후 장음1회) 및 여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현 위치에서 침착하게 대기하면서 다음 지시에 따라 행동 하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선장은 퇴선이 결정되면 VHF,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본선의 승선인원 및 위치, 퇴선이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조난신호를 작동하여야 한다.
- 선장으로부터 퇴선의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관할관청(지방청, 관할 해양경찰서(119)에 보고하고 구조선의 파견여부 등 구조수단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선박이 침몰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연료탱크 주입구, 배출구를 폐쇄토록 조치 해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퇴선신호 및 방송을 청취한 선원은 휴대품을 들고 담당객실 또는 구역의 여객이 질서 있게 퇴선 할 수 있도록 하고, 객실 또는 구역별로 지정된 대피장소에 정렬하게 한다.(구명부환이 위치한 곳)
- 퇴선준비가 완료되면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린다. (퇴선신호 연속음 30초 이상)
-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퇴선사실을 통보하고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 가능한 구조수단을 결정하고 본선 선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본선 여객 및 선원들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 및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선장은 “퇴선 해제” 라는 말과 함께 훈련 상황을 종료하며,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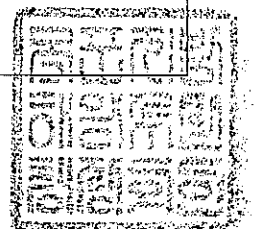
3) 비상조타훈련

- 선장은 조타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감속하고 비상신호 (장음3회 반복)와 여객에게 간략하게 방송하고 기관장은 비상조타 위치로 이동하며, 관계기관(해양긴급신고 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에 보고한다.
- 선장은 본선주위의 타선박의 통행량 확인 후 조타기 불능의 신호기류(주간에는 흑구2개, 야간에는 홍등 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기관장이 현장에 도착한 즉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비상조타로 전환한다.
- 선장은 조타기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면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조타기고장 발생·원인, 자체 수리 가능여부, 조타기수리 소요시간 등을 보고 한다.
- 기관장은 조타기 자체수리 등 조치한다.
- 선장은 비상조타 만으로 이·접안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수심이 낮은 쪽으로 항해하면서 즉시 투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다.
- 선장은 본선에서 조타기 자체수리가 불가할 경우 비상조타로 가까운 기항지까지 입항 가능여부와 필요한 경우 예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선장으로 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수리완료 되면 비상조타를 종료하고, 여객에게 안내방송 후 회사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조타기 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포함)를 실시 후 “비상조타부서 배치해제”란 방송과 함께 훈련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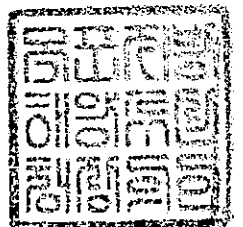
4) 인명구조훈련요령

-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자는 큰소리로 「OO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를 외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이 프로펠러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진 현으로 전타함과 아울러 기관을 정지시킨다.
-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부근에 있는 구명부환을 던져 주며, 가능하다면 야간에는 자기점화등, 주간에는 자기 발연 신호를 매달아 함께 던진다. 기타 현장 부근에 있는 나무 등의 부유물을 던질 수도 있다.
- 선장은 선내 경보를 울리고, 필요하다면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 구조반(갑판원)은 가능한 한 높은 장소에서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조선)할 방법을 빨리 결정하고 또한 실행하여야 한다.
- 선박 통행이 많은 장소에는 국제신호기 "O"기를 올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음을 알린다.
- 필요하다면 긴급통신을 송신하여 타 선박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색 및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선체와 떨어져서 구명부환을 잡고 그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구명조끼 호각, 기타 유효한 신호 방법으로 위치 표시를 계속한다.
- 구조반은 익수자와 본선간의 상대방위와 거리를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당시의 기상상황 및 익수자의 식별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적절한 조선으로 익수자를 본선의 풍하 측에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 구조반은 필요시 탐조등을 준비하고 익수자를 비춘다.
- 선장은 적절한 구조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반에게 지시한다.
- 익수자 위치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할시, 실종시간을 추정하여 항로를 회항하면서 익수자를 탐색한다.
- 선장은 익수자 발생 시 관계기관(해양긴급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에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보고한다.
- 익수자 구조 후 의식불명으로 긴급 환자 이송 등 육상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익수자의 상태 및 본선 조치내용 등을 안전관리 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선장은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건강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배치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 결과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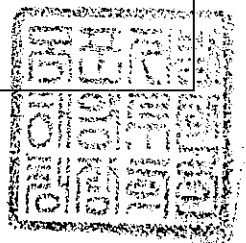
5) 기름유출 대처 훈련

- 본선 급유 중 급유선의 송유호스 파열로 기름 유출
- 최초 발견자는 “XX장소에 기름유출 발생”을 크게 외친다. 선장은 즉시 급유선에 연락하여 급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비상신호와 함께 오염 방제 부서 배치 발령(비상벨 단음7회, 장음1회)을 한다.
- 선장은 기관장에게 본선에 비치된 방제 자재를 사용하여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 후 유출 원인과 유출량을 확인하고 현장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 기관장은 방제작업을 지휘, 갑판상의 유출유 방제작업에 임한다.
- 선장은 현재의 상황(유출량 및 확산정도)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지원을 요청 하고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선장은 기름유출 구역을 포함한 본선에 화재의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여객이 승선해 있을 경우 여객이 동요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지원요청을 한다.
-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위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현장을 마무리 한 후 상황을 종료한다.
-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오염 발생시 사고관련 자료를 작성, 사고보고서를 안전관리 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선명, 사고유형, 사고일시, 장소, 사고개요, 추정 사고 원인, 확산 범위, 본선 조치 사항, 육상지원 요청사항, 기타 참고사항)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6) 추진기관 고장 훈련

- 항해 중 조타실의 엔진 오퍼레이팅 인디케이터에 알람이 울리며 엔진이 정지
- 선장은 기관장에게 기관고장 원인과 수리 가능여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필요시 비상 투표를 고려한다.
- 기관장은 본선에 부속품이 있으므로 자체수리가 가능하고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즉시 비상부서배치신호를 발령하고 운전부자유 형상물 게시(즉, 주간에는 흑구2개, 야간에는 홍등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 및 VHF로 인근 선박에게 주위환기 방송을 실시하며 침로유지를 하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 선내 방송으로 위 사실을 여객에게 알리고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한다.
- 자체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선장은 비상 투표 혹은 임의 좌주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여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후 예선을 요청하며 선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빠른 시간 내에 자체수리가 가능하다고 기관장에게 보고를 받고 주위 해상교통을 파악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DRIFTING하기 시작한다.
- 선장은 기관장으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고 엔진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엔진고장 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 포함)를 하고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안내방송을 통하여 알리며 “추진력 상실 부서배치 해제” 라는 방송과 함께 훈련 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7) 충돌·좌초 및 전복사고 훈련

(충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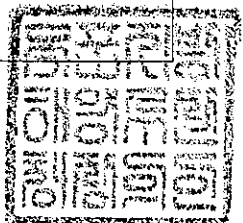
-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불어 발령을 하고 여객의 안전 여부와 본선의 침수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 상대선박을 호출하여 상대선박의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 파공으로 인해 침수 발생시 뺨기 등으로 방수 조치를 한 후 퇴선 여부를 판단한다.
- 피해정도가 적고 자력으로 회항이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안전하게 가까운 항구로 회항한다.
- 선장은 필요시 예인 등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좌초 시)

-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불어를 발령하고 여객의 안전 여부와 본선의 침수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 파공으로 침수 발생 시 뺨기 등으로 방수 조치한다.
- 침수가 없고 자력으로 이초가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자력 이초하여 가까운 항구로 가서 정박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 본선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선장은 퇴선 혹은 예인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는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즉각 위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전복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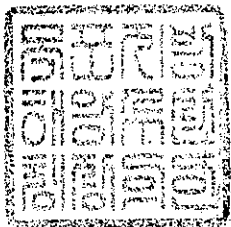
- 선장은 전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모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 질서를 유지하여 정해진 소집 장소에 집합하게 한다.
- 선장은 승무원에게 구명부기 등 구명설비를 투하하여 퇴선을 준비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 및 인근선박에 구조를 요청한 후 퇴선을 명령한다.
- 구조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조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승무원 및 여객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들은 여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퇴선을 유도한다.
- 여객전원이 구명부기 및 구명설비 등에 안전하게 퇴선한 것을 확인한 승무원들은 퇴선 시 소지해야 하는 지참물을 소지하고 마지막으로 퇴선한다.
- 선장은 훈련 종료 후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붙임 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배치신호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 비상해제신호 : ■■■■■■ (장음 1회 단음 1회 3회 연속반복)
 - 항계내 화재신호 : ■■■■■■ (장음 5회 반복)
 - 퇴 선 신 호 : ■■■■■■ (연속음 30초 이상)
 - 기타 비상신호 : ■■■■■■(장음 3회 후 비상배치 방송 : OO구역 OO발생 전원 비상배치)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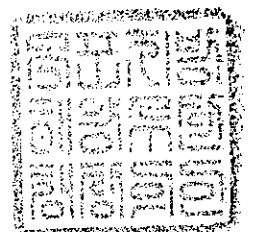
[붙임 13]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대흥고속카페리)

구분	연번	장비·시설	수량	설치장소
항해	1	RADAR	1	조타실
	2	AIS	1	조타실
	3	마그네틱 컴퍼스	1	조타실
기관	4	MAIN ENGINE	2	기관실
	5	REDUCTION GEAR BOX	2	기관실
	6	AUX. ENGINE(G/E)	2	기관실
	7	FIRE PUMP	1	MACH. ROOM
	9	ACC. AIR CONDITIONER	2	MACH. ROOM
통신	10	VHF	1	조타실
구명	11	LIFE JACKET(구명조끼) (대인용+소인용 +유아용)	435	여객실 & Pass. Dk
	12	구명부기(12인승)	15	"NAV. Dk"
	13	LIFE BUOY(구명부환 줄불이)	2	"NAV. Dk"
	14	LIFE BUOY(구명부환)	2	"NAV. Dk"
소화	15	휴대식 소화기(분말, 포말, CO2)	24	선체 각부
	16	소화전(40A)	11	선체 각부
	17	자장식호흡구 및 소방원장구	1 조	조타실
기타	1. 구명 및 소화장비 현황는 첨부 된 관련 도면에 상세히 표기 되어 있음			



[붙임 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관련 문서
영구 보존기록	○국적증서 ○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운항관리규정 관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5년 보존기록	○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선박검사 관계 ○선박점검 관계 ○해양오염방지 관계 ○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3년 보존기록	○선원관리 관계 ○선원자격 관계 ○선원교육 관계
1년 보존기록	○항행통보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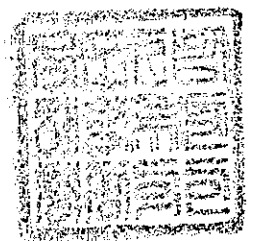
[붙임 15] 문서관리대장

☐ 도면 및 서류

연번	문서(명)	보존기간	관리자
1	운항관리규정	영구	선장
2	여객선 이력관리장부	영구	선장
3	복원성 자료	영구	선장
4	출항전 점검보고서	1년	선장
5	항해일지	3년	선장
6	기관일지	3년	기관장
7	승무원 명부	영구	선장
8	해기사 면허증	영구	선장
9	선원수첩	영구	선장
10	선박관련 도면(일반배치도 외)	영구	선장
11	문서접수 대장	3년	선장

☐ 증서목록

연번	문서(명)		보존기간	관리자
1	선박국적증서		영구	선장
2	한국선급증서		영구	선장
3	선박검사증서		영구	선장
4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영구	선장
5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영구	선장
6	승무원정원증서		영구	선장
7	무선국 허가증		영구	선장
8	무선검사필증		영구	선장
9	보험가입증서	선박공제증권	영구	선장
		선주배상책임공제증권		
		선원공제증권		
10	항만시설사용허가서		영구	선장



[붙임 16] 내부심사절차서

1. 심사 구분

-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 가. 당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
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아래 사항을 협의한다.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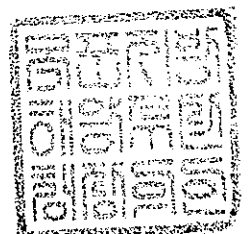
가. 결과보고 절차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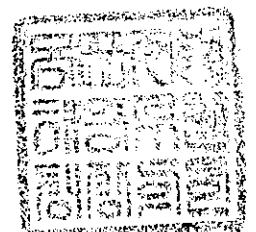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내 부 심 사 점 검 표			심사대상		
			심사종류	년도 (□정기 □특별)	
심사목적			심사기간		
운항관리규정 항목	부적합	권고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1.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책임심사자		
2.안전관리 조직					
3.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4.운항기준도					
5.선장의 보고사항					
6.위험물 취급			일반심사자		
7.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8.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정비					
9.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10.여객준수사항의 전달					
11.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구 분	중부적합(○)	건
12.문서 및 자료관리				경부적합(△)	건
1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권고사항	건
14.내부심사			원 인 별 분 석	절차내용 미흡	건
15.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평가				절차 불이행	건
합 계				업무이해 미흡	건
				시정조치 미흡	건
				증거(기록)미흡	건
			지원 미흡	건	
심사결과 요약 및 분석					
유첨	1.부적합사항 보고서 부				
작 성 일	작 성 자		검 토 자		확 인 자
주) 작성 → 책임심사자, 검토자 →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자 → 사장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